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차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제 3 조 【정의】	

제 2 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제 4 조 【전기의 사용신청】	
제 5 조 【전기사용계약서·전기공급예정서 작성】	
제 6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 7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 8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 9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0 조 【전기사용장소】	
제 10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제 10 조의 3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제 11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제 12 조 【계약전력 산정】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13 조 【공급방법】	
제 14 조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제 15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	
제 16 조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 17 조 <삭 제>	

제 18 조	【수급지점】
제 19 조	【지중공급설비의 시설】
제 20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제 21 조	【지중인입선】
제 22 조	【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제 23 조	【전용공급설비】
제 24 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 25 조	【전기계기의 정밀등급】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26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 27 조	【역률의 계산】
제 28 조	< 삭 제 >
제 29 조	【위약금】
제 30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 31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 32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제 33 조	【설비의 손상실에 대한 배상】
제 34 조	【업무협조】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35 조	【전기설비 점검】
제 36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제 37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 7 장 계약종별

제 38 조	【계약종별의 구분】
제 39 조	【주택용전력】
제 40 조	【일반용전력】
제 41 조	【교육용전력】
제 42 조	【산업용전력】
제 43 조	【농사용전력】
제 44 조	【가로등】

제 45 조 【예비전력】
 제 46 조 【임시전력】
 제 46 조의 2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47 조 < 삭 제 >
 제 48 조 【요금의 계산】
 제 48 조의 1 【초과사용부가금】
 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 50 조 【검침일】
 제 51 조 【요금의 계산기간】
 제 52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제 53 조 【전력량계의 검침】
 제 54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
 제 55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제 56 조 【전기계기의 오차율 측정】
 제 57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 58 조 【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
 제 59 조 【연체료】
 제 60 조 【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
 제 61 조 【요금의 보증】
 제 62 조 【일수계산】
 제 63 조 【요금변경시의 중간검침 실시】
 제 64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1 절 공사비 부담기준

제 65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
 제 66 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 67 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제 68 조 【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 69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 70 조 【잠정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 71 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 72 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제 73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제 7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 2 절 표준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5 조 【공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제 76 조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제 77 조 【특수한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제 3 절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8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제 79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제 80 조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제 10 장 보 칙

제 81 조 【농어촌 용자금 회수】
 제 82 조 【S.N.W 공급방식】
 제 83 조 【기타】

부 칙

【별표 1】 위약유형별 산정기준표
 【별표 2】 잠정사용설비의 사용시간 기준표
 【별표 3】 계절사용설비 및 사용기간 적용기준표
 【별표 4】 기본공급약관 특례
 【별표 5】 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
 《구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기준》
 《신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기준》
 【별표 6】 콘덴서 설치용량 기준표
 【별표 7】 기기별 역률 및 무효전력표
 【별표 8】 평균역률 계산표

기 본 공 급 약 관 시 행 세 칙

1999. 11. 2 전면개정

2012. 4. 6 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은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 제4조(시행세칙)에 따라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제1항의 “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이란 전기요금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 3 조 【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등(電燈)

백열전구, 형광등, 네온관등, 수은등 등의 조명용 전기기기(부속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소형기기(小型器機)

주로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전등 이외의 저압 전기기기를 말한다.

3. 동력(動力)

전등 및 소형기기 이외의 전기기기를 말한다.

4. 검 침

종량제 고객의 전력량계 지침을 읽어 사용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한 후 이를 고객과 요금 계산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수 금

전기요금,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농어촌용자금 등을 고객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업무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6. 위 약

한전과 전기사용계약 없이 사용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경우 또는 한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설치하거나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22.9kV 스포트 네트워크(SPOT-NETWORK)방식

한전의 변전소에서 1전기사용장소에 2회선 이상의 22.9kV-Y 배전선로로 공급하고 고객이 각 배전선로에 시설한 수전용 변압기의 2차측에서 상시 병렬 운전하는 공급방식을 말한다.

8. 계약종별

전기사용 용도 등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종류를 구분한 것을 말한다.

9. 저압

직류 750볼트 이하, 교류 6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10. 고압

직류 750볼트를 초과 7,000볼트 이하, 교류 6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1. 특고압

7,000 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12. 일반용전기설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3.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사업자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제 2 장 전기의 사용신청, 계약의 체결·변경 및 해지

제 4 조 【전기 사용신청】

- ① 약관 제8조(전기 사용신청)의 “전기 사용신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계약전력의 신·증설
 - 2. 전기의 공급방식 또는 공급전압의 변경
 - 3. 전기사용계약단위의 합병 또는 분할
 - 4.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의 변경
 - 5. 고객의 희망에 따른 인입선 위치변경
 - 6. 증설없는 계약종별의 변경
 - 7. 증설없는 전기계기의 교환
 - 8. 전기사용계약 해지(계약전력의 감소 포함)
 - 9. 배전반 위치변경
 - 10. 전기계기의 재봉인 및 시험
 - 11. 명의변경 및 주소변경
 - 12.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 13. 휴지 또는 재공급 등
- ② 약관 제8조(전기 사용신청) 제2항 단서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1항에 해당하는 고객 중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의 휴지 또는 재공급
2. 주택용 저압전력 고객·계약전력 5kW이하 고객·주거용 심야전력(갑) 고객의 명의변경. 다만, 사용자별 요금구분 청구는 제외
3. 전기사용장소의 지번 정정 또는 지불장소 변경
4.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
5. 전기계기의 재봉인 및 시험
6. 인입선 정비 또는 교체

제 5 조 【전기사용계약서 작성】

약관 제10조(전기사용계약의 성립 및 전기사용계약기간)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서는 공급준비 착수전에 작성하며, 그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자가용전기설비 고객
2.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등 고객간 전기설비의 일부를 공용하는 고객
3.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
4. 예비전력 고객
5. 임시전력 고객
6. 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를 제공한 고객
7. 단일계약 아파트 및 종합계약 아파트 고객
8. 냉동 창고, 양어장(양식장), 양계장(부화장), 특용작물재배 등 휴·정전시 재산 피해가 예상되는 고객
9. 제12조(계약전력 산정) 제3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 고객
10. 기타 고객이 요청하거나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 6 조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 ①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2항의 “상속, 합병 등”이란 상속, 증여, 기업합병 및 취득에 따라 전기사용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고, 제3항의 “매매 등”이란 매매, 임대차, 경락 등에 따라 전기사용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1항의 매매 등으로 변경된 전기사용자가 명의변경만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전기의 사용신청)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사용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명의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이전 사용자 명의로 계속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와 한전간에 전기사용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한전은 실제 사용자로 명의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때 고객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한전은 실사용자에게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에 따라 보증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7 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건물 철거에 따른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제외한 전기사용계약 해지는 고객이 해지희망일 전일까지 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고객이 해지희망일을 정하지 않고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지요청 접수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날을 전기사용계약 해지일로 한다.
- ③ 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의 “고객의 책임”이란 고객 의 부재나 노사분규 등 고객의 사정으로 한전직원의 전기사용장소 출입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 8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 ① 전기요금 미납고객의 전기사용계약 해지일자는 원칙적으로 요금납기일부터 2개월 경과 후의 전기공급정지일로 한다.
- ②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의 해지를 보류할 수 있다.
 1. 주한외국기관, 군부대 및 행정관서 고객으로서 한전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조치한 경우
 2.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해당되는 고객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연대보증서 등을 수취하여 수금이 가능할 경우
 3.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 단서의 “혹서기·혹한기”는 다음과 같다.
 - 가. 혹서기 : 7월부터 9월까지
 - 나. 혹한기 :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제 9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 ①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 및 제2항의 “1년” 또는 “3년” 기간 산정은 전기사용계약 해지 다음날부터 역월(曆月)에 따른 신청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기산 마지막 월에 해당일이 없으면 당해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전에 재사용 신청하였으나 재사용수수료 또는 공사비 미납부, 구비서류 미제출, 내선설비 미준공, 수전설비 미비 등 고객의 책임으로 전기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 ②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 해지기간중의 기본요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다만, 임시전력고객은 계약기간 이내인 경우에 한하며, 고객이 신규신청을 희망할 경우에는 약관 제9장(시설부담금)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담한다.
 1.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요금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2. 해지당시와 재사용시의 공급조건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적용한다.

- 가. 계약종별 : 해지당시의 계약종별
 - 나. 계약전력 : 재사용시의 계약전력
 - 다. 공급전압 : 재사용시의 공급전압
- ③ 에너지 소비절약을 위한 정부시책에 따라 전기사용설비(가로등, 광고등, 경기장 조명 시설 등)의 일부나 전부의 전기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정부시책의 변경에 따라 계약전력 감소 및 전기사용계약 해지 이전의 전기설비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기본공사비 전액을 감액한다.
- ④ 약관 제16조(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시의 고객부담) 제2항의 “공급조건이 해지당시와 다른 경우”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시설부담금”이란 다음과 같다.
1.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 또는 공급전압과 계약전력이 동시에 변경되는 경우
해지이전과 재사용을 각각 신설한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 차액
 2. 해지이전과 재사용시점의 공급전압이 모두 저압인 경우로서 계약전력 증가없이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
재사용시의 공급방식(또는 공급전압)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첩가거리시설부담금
 3. 공급단위를 분할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4. 상기 “제1호·제2호·제3호”와 같은 공급조건 변경없이 고객요청에 의해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 등의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
재사용 시점의 공급설비 변경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
 5. 상기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
약관 제89조(공급설비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및 세칙 제71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에 따라 산정한 시설부담금
- ⑤ 전기사용계약 해지후 재사용 신청시 당해 고객의 변압기설비 및 사용설비의 변경없이 약관의 변경으로 계약전력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제 3 장 전기사용계약의 기준

제 10 조 【전기사용장소】

-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구내”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분되고, 1 소유자가 관리하는 구역 또는 법인인 회계주체가 관리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공로(公路)·하천 등으로 구분되고 각 구내가 동일 회계주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일괄하여 1구내로, 광산·간척지사업지구 등과 같이 넓은 지역은 회계주체의 관리구역을 1구내로 볼 수 있다.
- ② 지형적·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1구내를 2이상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 ③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1항의 “1건물”이란 소유자나 사용자와 관계없이 독립된 1동(棟)의 건물을 말한다. 다만, 인접한 2이상의 건물이 지상 또는 지하로 직접 통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소유자와 사용자가 모두 동일할 경우에는 그 전체를 1건물로 볼 수 있다.
- ④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 제4항에서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구분”되는 경우란 1건물에 상가부분과 주거부분이 별도의 층(層)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공동설비는 함께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구내도로나 공원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공동설비 등 전기설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구내도로나 공원 등을 기준으로 전기사용장소를 구분할 수 있다.
- ⑥ 유수지 배수펌프장 등 휴지대상 고객의 구내에 있는 관리사무소, 사택 등 주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상시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은 유수지 배수펌프장과 별도의 전기 사용장소로 구분 할 수 있다.

제 10 조의 2 【전기사용계약단위】

- ① 전기사용계약단위는 1전기사용장소를 기준으로 다음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 1. 단독주택
 - 가. 주택에 부수되는 별채·창고·차고 등 부속건물을 포함한다. 다만,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 1가구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2. 공동주택
 -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각 1호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고 공동설비는 그 전부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기능이 서로 다른 2이상의 공동설비가 있고 구내배선이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나. 고압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3. 상점부 주택
 - 가. 부속주택을 포함한 1건물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1건물에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상점(주거기능이 있는 경우 포함)이 있고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나. 1전기사용장소에 독립된 주택부분과 상점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壁)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 4. 사무실, 관공서, 학교, 판매 및 영업시설(시장·상점·상가·백화점·쇼핑센터), 오피스텔, 공장, 병원 및 기타
 - 가. 저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

분한다.

나. 고압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계약단위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이상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된 소유자별, 전용변압기별, 층별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다만, 통신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은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1전기사용장소 계약전력 1,000kW미만인 경우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통신사업자의 중계기 등 외부인 임대시설 포함)에는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강기 등 공동설비는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구내나 1건물내에 있는 주택부분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분한다.

라. 아파트형공장내에서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마. 1전기사용장소에 제3호와 제4호의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장소의 형태, 사용계약단위 구분 목적, 전기공급방법, 검침 및 설비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5. 상가부 공동주택

1건물내에 공동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이 있고 그 사이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경우 공동주택부분은 제2호에 따라, 상가부분은 제4호에 따라 구분한다. 이 때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부분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 설비는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6. 가로등

등주 1본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배선으로 2본 이상이 연결되어 1구역을 이루는 경우에는 1구역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한다.

7. 광고등

별도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지 않고 주된 전기사용장소내의 부속설비로 한다. 다만, 도로 등에 설치하거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각각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다.

② 용접기 등의 사용설비가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기술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별도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삼상 4선식 220V/380V 공급고객이 단상용접기를 사용할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설로 처리하되 당해 고객에게는 전용 저압선 및 인입선을 시설한다.

1. 사용용접기의 단위용량이 10kVA 이하로서 공용변압기 용량이 50kVA 이상인 경우

2. 공급하는 변압기가 당해 고객에게만 공급하는 경우

- ③ 주된 고객의 운영에 필요한 동일 전기사용장소내 부대시설은 주된 고객의 전기사용 계약단위에 포함한다. 이 때 부대시설이란 사택을 제외한 사무실, 부속시설 및 후생 시설 등을 말한다.
- ④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말하며, 제 1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1전기사용장소 전체를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할 수 있는 경우”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 또는 종합계약방법 등을 말하며 그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적용방법

가. 아파트 단일계약방법이란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에 의거 아파트 1구 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요금은 공동설비 사용량을 포함한 전체 사용전력량(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제외)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戶數)로 나누어서 평균사용량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에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수를 곱한 것을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전체 기본요금 및 전력량요금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개별세대 사용량중 주택용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부분이나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을 적용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 해당 종별로 요금을 계산하며 아파트 전체요금은 세대분 요금과 공동설비 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나. 아파트 종합계약방법이란 아파트 1구내(또는 1건물)에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주택용전력 적용대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 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는 일반용전력(압) 고압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주택용 전력 이외의 요금을 적용하는 세대(戶)에 대하여는 해당 종별의 저압요금을 적용하고 공동설비 중 교육용전력 적용대상에 대하여는 교육용 고압요금을 적용하며 아파트 전체요금은 세대분 요금과 공동설비 요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 2. 공동설비를 포함한 1구내를 1전기사용장소로 하고, 상가 부분은 아파트와 별도의 1전기사용장소로 하여 전기를 공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 3. 상수도가압설비, 오수정화설비, 구내보안등, 통신사업자의 중계기, 임대상가 등 계약종별 또는 기능·용도가 달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 제25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단일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종합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 변경신청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 기간이 5 영업일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하며, 종합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아파트 고객이 단일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변경할 때는

신청일이 속하는 검침월분 요금부터 변경 신청한 계약방법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이때 계약방법을 변경한 고객은 변경후 1년 이내에 다른 계약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고압아파트 요금제도의 변경, 아파트 관리주체가 건설 사업주체에서 관리사무소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라도 1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신규고객은 신설후 1년 이내 2회에 한하여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방법의 변경이있는 경우 전기요금 등 기타 계약내용은 변경된 계약방법을 따른다.

5. 아파트 계약방법별 적용시기는 종합계약의 경우 상시수전설비 준공일부터 적용 가능하며, 단일계약의 경우 건물 준공일(준공전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최초 입주자가 입주한 날부터 적용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한 “공동설비”란 승강기,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등 회계주체가 다른 2호 이상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전기배선을 회계주체별로 분리할 수 없는 설비를 말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불구하고 전기사용 용도, 집합건물 관리사무소의 관리능력, 경제적·기술적 특수성, 전기요금관련 채권채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구분할 수 있다.

제10조의3(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전기사용계약기준)

- ① 약관 제18조(전기사용장소)에 불구하고 고객이 희망할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 별도의 전기사용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한 공급전압은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에 따라 결정하며, 충전용설비 전체에 대하여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③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에 대해서는 별표4(기본공급약관 특례) 제4호에서 정한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전기요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전력량계를 설치한다.
- ④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의 시설부담금 등 기타 공급조건은 기본공급약관을 적용한다.

제 11 조 【계약전력 결정기준】

- ① 마력표시 전동기의 입력환산방법이 변경될 경우의 계약전력은 개정된 입력환산방법에 따라 증설후 또는 계약전력 감소 후의 사용설비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 ② 22.9kV 스포트 네트워크방식(이하 “22.9kV S.N.W방식”이라 한다)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산정한다.

제 12 조 【계약전력 산정】

- ①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른 계약전력산정을 위한 사용설비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 용량이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아래 표에 따라 입력으로 환산한다. 이

때 전동기의 출력이 kW와 마력(HP) 두가지로 표시된 경우에는 kW를 기준으로, 마력(HP)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1마력을 750W로 보고 kW로 환산한 후 해당 입력환산율을 적용하며, 특수기기는 당해 기기의 변압기용량을 기준으로 해당 입력 환산율을 적용한다.

사 용 설 비 별			출력표시	입력(kW) 환산율
백 열 전 등 및 소 형 기 기			W	100%
전 열 기			kW	100%
특수기기(전기용접기 및 전기로)			kW 또는 kVA	100%
전 동 기	저 압	단 상	kW	133%
		삼 상	kW	125%
	고압, 특별고압		kW	118%

2. 조명기구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가. 형광등

형광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25%로 한다.

나. 수은등·메탈등·나트륨등 등의 방전등

방전등의 환산용량은 표시된 정격용량(W)의 115%로 한다.

다.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조명기구

고효율안정기를 설치한 형광등, 메탈등, 나트륨등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는 표시된 정격용량의 100%로 한다.

3. 소형기기(小型器機)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사용설비의 용량을 계산한다. 이 때 분기(分岐)소켓 등 고정적이지 않은 것은 콘센트로 보지 않는다.

가.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많은 경우 :

소형기기의 용량이 큰 순서대로 콘센트 수에 해당하는 소형기기의 용량을 합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나. 소형기기의 수(數)가 콘센트의 수보다 적은 경우 :

소형기기의 수를 초과하는 콘센트의 수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소형기기의 합계용량에 가산한 것을 사용설비의 용량으로 한다.

(1) 주택, 독신자합숙소 등 주거용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50W

(2) 그 밖의 시설 : 초과 1콘센트마다 100W

4. 가로등(갓)은 사용설비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하며 단위는 와트(W)로 한다.

5. 주택용전력은 사용설비의 합계가 3kW 미만일 경우 계약전력을 3kW로 한다.

6. 정격소비전력이 표시된 전기기기는 소비전력 용량을 입력용량으로 한다.

7. 보호장치나 계기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로 보지 않는다.

8. 명판에 따라 입력환산할 수 없는 전기기기의 용량은 한전의 입력시험(용량시험)에 따라 결정한다.

9.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하는 고객의 계약전력은 변환기 2차측 사용설비에 따라 결정한다.
10. 수중전동기의 계약전력은 정격출력에 다음 표의 입력환산율을 적용한다.

구 분		수중전동기 입력환산율	
오·배수용	저압	단 상	146.3%
		삼 상	137.5%
	고 압	129.8%	
깊은 우물용	저압	단 상	159.6%
		삼 상	150.0%
	고 압	141.6%	

11. X-ray 장치의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가. 해당기기의 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입력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입력을 기준으로 하고, 입력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단상 X-ray 입력환산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종 별	최 고 정 격 관전압(kVP)	최 대 정 격 관전류(mA)	입력환산(kW)
치 과 용			1
치 료 용			정격1차최대입력
진 단 용	100kVP	300mA	18
	100kVP	500mA	30
	125kVP	500mA	37
	150kVP	500mA	46
축전기방전식 진 단 용	컨덴서용량 0.75 μ F 이하		1
	0.75 μ F 초과 1.5 μ F 이하		2
	1.5 μ F 초과 3.0 μ F 이하		3

나. 단상 X-ray 입력환산표에 따라 입력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기명판이나 사양서 등에 기재된 단시간 정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력을 환산하여 결정한다. 이 때 “단시간 정격”이란 1초 이상의 사이에 X선관에 부하를 걸 수 있는 관전압 값 및 그 관전압에 있어서 최대전류 값의 조합을 말한다.

$$P = V \times I \times F \times 1 / 1000 (\text{kW})$$

P=입력(kW), V=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압(kVP)

I=최대정격출력을 얻는 관전류(mA)

F=맥동율(단상 74%, 삼상 6피크형 95%, 삼상 12피크형 100%)

12. 광중계기 등 소형통신중계기는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행한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W)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하며 용량이 출력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상기 1의 ‘소형기기’ 입력환산율을 적용하여 입력(W)으로 환산 한다. 다만, 입력 또는 출력이 피상전력(VA)으로만 표시된 경우에는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유효전력(W)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 한다.

②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의한 계약전력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삼상공급을 위하여 단상변압기를 결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것을 변압기설비의 용량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한다.
 - 가. △ 또는 Y결선의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의 합계
 - 나. 동일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결선된 단상변압기 용량합계의 86.6%
 - 다. 서로 다른 용량의 변압기를 V결선한 경우
[큰 용량의 변압기(A), 작은 용량의 변압기(B)]
 $(A-B) + (B \times 2 \times 0.866)$
2. 2단계 변압시설을 가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차 변압기 설비의 고객측 변압기(이하 “2차변압기”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 2차변압기의 전원측 전압과 같은 전압의 사용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을 합한 것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3. 전등 및 소형기기를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와 동력을 주로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전등 및 소형기기의 변압기 용량과, 동력변압기에서 공급되는 사용설비에 대하여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할 수 있다.
4. 공급전압과 전압이 동일한 사용설비와 변압기설비가 같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1항에 따라 산정하고, 변압기설비는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또는 상기 제1호에 따라 산정하여, 두 용량(kW)의 합을 계약전력으로 한다.
5. 변압기 용량표시가 두가지인 경우 계약전력 산정은 용량이 큰 것을 기준으로 하되 풍냉장치(Fan)로 인해 용량표시가 두가지로 된 것은 고객이 원할 경우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용량이 작은 것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산정할 수 있다.
6. 변압기설비는 2차변압기까지만 계약대상으로 인정하되, 2차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차변압기 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보다 작아야 한다.
7. 전기로를 소유한 고객은 전기로에 부착된 변압기의 용량을 기준으로 약관 제20조(계약전력 산정) 제2항 및 상기 제1호에 따라 계약전력을 결정할 수 있다.
8. 무효전력 보상설비 전용변압기는 계약전력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9. 3권선변압기의 계약전력은 각 권선을 1차변압기로 간주하여 아래의 산정방법에 따라 가장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되, 사용설비측 전압이 저압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 표시용량으로, 사용설비 전압이 고압 이상인 수전변압기는 변압기에 결선된 사용설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1차권선(전원측)의 표시용량

- 나. 2차권선(부하측)+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 다. 2차권선에 결선된 고압 이상의 사용설비 용량+3차권선(부하측)의 표시용량
10. 수전용 주변압기(전 6호의 경우 2차변압기 포함) 고장으로 임시변압기를 잠정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 가.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 주변압기 용량을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 전력은 변경하지 않는다.
 - 나. 잠정설치기간은 설치후 3개월까지로 한다.
 - 다. 임시변압기 용량이 기설변압기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잠정설치기간이 경과하면 임시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을 변경한다. 이 때 잠정설치기간 만료일까지 주변압기 용량으로 교체하지 않거나 임시변압기 용량으로 증설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료일 익일부터 위약처리한다.
- ③ 교대 또는 계절성 설비에 대한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다른 설비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시설한 교대설비 및 예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 중 여름철에만 사용하는 설비와 겨울철에만 사용하는 설비가 함께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서 용량이 큰 쪽의 사용설비나 변압기설비만을 계약전력 산정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전기의 공급방법 및 공사

제 13 조 【공급방법】

약관 제22조(공급방법) 단서의 “인입방법을 달리 할 수 있는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22.9kV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계약에 2이상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2. 제14조(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제4항 제1호 “라”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1전기사용 계약에 2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한다.
3. 공동인입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에 1인입으로 공급한다.
4. 기타 전기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적합한 인입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 14 조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① <삭 제>

② 저압고객의 공급전압 및 공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저압단상고객은 단상2선식 220V로 공급한다.
2. 저압삼상고객은 삼상4선식 220V/380V로 공급한다. 다만, 삼상3선식 220V로 공급

설비의 변경없이 공급이 가능하고 삼상4선식 220V/380V 공급설비의 신설이 곤란하여 삼상3선식 220V 공급이 불가피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삼상3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다.

3. 단상 2선식 220V와 삼상 3선식 220V를 삼상 4선식 220V/380V로 공급하는 것은 1 전기공급방식으로 본다.

4. 단상전동기의 전력공급

가. 일반전등 고객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등변압기에서 공급가능한 단상전동기의 용량한도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이 때 전동기를 2개 이상 동시 기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출력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단위 : 마력)

전압별 \ 기동형별	분 상	반 발	콘 덴 서
100V	$\frac{1}{2}$	$\frac{3}{4}$	$\frac{1}{2}$
220V	1	$1\frac{1}{2}$	1

나.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단상 2선식 220V로 공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일반 단상전동기 : 기동전류가 37A 이하

(2) 룸에어컨 : 60A 이하

다. 탈곡기, 건조기, 양수기 및 농약살포용의 소형 전동기는 변압기의 소손이나 공급설비에 지장이 없는 한, 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다.

라.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동기 1대의 출력(동시 기동이 가능한 경우는 그 합계)이 변압기출력의 1/10 이하일 경우에는 전 “가”의 기준에 관계없이 전등공용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으며, 1/10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독변압기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때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이란 기설 삼상고압 이상의 전선로에서 2상3선식이나 단상2선식 고압 이상의 전선로가 10경간 이상 연장된 지역을 말한다.

5. 회전위상변환기의 사용

가. 삼상전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회전위상변환기를 사용할 수 있다.

나. 계약전력 합계가 100kW 미만인 경우로서, 회전위상 변환기 1대당 용량이 20kV A 이하일 경우에는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6. 저압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기능이 서로 다른 공동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동설비에 대하여 계약전력 500kW 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③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2항에 따라 500kW미만까지 저압으로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가 150kW이상인 경우에는 공중공급대상지역 또는 지중공급대상지역에 관계없이 약관 제24조(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및 세칙 제15조(한전 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의 전기사용장소내

에 한전 공급설비 설치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설 한전 변압기에 여유용량이 있거나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공급여건상 가능한 경우에는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300kW미만까지는 전기사용 장소 밖의 한전 변압기에서 공급할 수 있다.

2. 제1호 단서에 따라 300kW미만까지 전기사용장소 밖의 한전 변압기에서 저압공급할 때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신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150kW미만까지는 공중인입선으로 공급하고, 그 이상은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증설 신청 고객의 증설후의 계약전력 합계가 150kW이상인 경우로서 도로굴착허가 제한 등으로 지중인입 공급이 곤란하고 공중인입으로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공중 인입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나. 지중공급대상 지역에서는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한다.

다. “가”에 따라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지중인입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제66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3. 전기사용장소 내에 한전 변압기 설치공간을 제공받아 저압공급할 때의 공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당해 전기사용장소의 부하용량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변압기를 설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변압기를 이용하여 인근의 다른 전기사용장소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다.

나. 수급지점은 한전 변압기의 고객측 연결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점으로 한다.

다. 시설부담금은 지중지역인 경우에는 신설 또는 증가하는 계약전력에 대하여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공중지역인 경우에는 제66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2항 제2호에 따라 적용한다.

라. 계약전력 500kW미만 기설 저압고객이 다음 기준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설후 계약전력 합계 600kW미만까지는 계속하여 저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최초 수급개시일로부터 1년 경과후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2) 500kVA이하 한전 변압기로 공급가능한 경우

(3) 증설로 인해 한전 변압기 등 전력설비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필요한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

(4) 향후 계약전력 합계 600kW 이상으로 증설할 경우에는 고객 수전설비를 설치하여 고압으로 공급받겠다는 약정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조건

(5) 증설용량에 대한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

④ 고압 이상 수전고객의 공급방안은 아래와 같다.

1. 공급방안의 결정

- 가. 한전의 요청에 따라 고객 구내에 한전의 154kV 변전소 부지를 제공(유상 또는 무상)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최대수요전력) 기준으로 변전소 공급능력의 3분의 1까지 22.9kV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으며, 154kV 변전소 부지제공을 포함하여 변전소 신설공사비를 분담할 경우에는 변전소 공급능력의 2분의 1까지 22.9kV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변전소 신설공사비 분담은 고객과 한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고객소유선로 1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부하설비 용량은 20,000kW 이하로 한다.
- 나. 계약전력 14,000kW 이하의 신·증설 고객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2.9kV 일 반공급설비로 공급할 수 있다.
- (1)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를 고객 부담으로 시설하여 최대수요전력을 10,000kW 이하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전기공급을 정지할 수 있는 조건
 - (2)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고객의 부담으로 전압보상장치를 시설하여 사용하는 조건
 - (3) 선로사고 등 비상시 부하절체가 불가능한 것에 대비하여 자가발전 또는 기타 대비책을 강구하는 조건
- 다. 고객이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 소유 22.9kV 전용공급설비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신설 또는 증설후 계약전력이 10,000kW 초과 14,000kW 이하인 경우
 - (2) 신설 또는 증설후 계약전력이 14,000kW 초과 20,000kW 이하로서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한전에서 정한 대용량배전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
- 라. 신설 또는 증설후 계약전력이 20,000kW 초과 40,000kW 이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2.9kV 전용공급설비 2회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선에 접속할 수 있는 부하설비 용량은 20,000kW 이하로 한다.
- (1) 한전 변전소의 공급능력 및 인출개폐장치에 여유가 있고, 변전소로부터 전기사용장소에 이르기까지 공급선로구성에 문제가 없는 조건.
이 경우 변전소의 공급능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변전소 공급능력(kW) = (최종규모의 Bank 용량 합계[kVA]-1Bank 용량 [kVA]) × 0.9
 - (가) 인출개폐장치의 여유라 함은 고객의 신증설 요청시점에 사용계획이 있는 개폐장치를 제외한 여유분을 말한다.
 - (나) 최종규모라 함은 변전소 건설 시 설계된 최종 변압기 Bank 수를 말한다

다.

- (2) 공급선로가 Loop 운전되지 않도록 고객 소유의 수전설비를 공급선로별로 완전히 분리하여 운전하는 조건
- (3) 전압강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부담으로 전압보상장치의 설치 또는 기타 자구책을 강구하는 조건
- (4)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라”의 규정에 따라 22.9kV 전용공급설비 2회선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지중 배전선로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여도 향후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선로경과지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가공배전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 (2) 공급선로는 다음과 같이 공급선로별 부하설비 용량에 따라 일반 배전방식 또는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구성하여 공급한다.

공급선로별 부하설비 용량	공급선로 구성방법
14,000kW이하	아래 “(4)”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공급 단, 장래 설비증설 계획 또는 전압강하 등의 문제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구성 가능
14,000kW초과 20,000kW이하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공급

다만, 한전이 전용공급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전은 고객과 협의하여 당해 전용공급설비를 일반공급설비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을 당해 고객에게 환불한다.

$$\text{환불금액(원)} = \frac{\text{한전이 이용가능한 용량(kW)}}{\text{해당 배전선로 상시 최대 운전용량(kW)}} \times \text{기부담한 설계공사비(원)}$$

- (3) 공급선로(2회선)는 동일 변전소의 서로 다른 주변압기에서 인출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변전소 공급능력 또는 인출개폐장치에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변전소에서 인출하여 공급할 수 있다.
- (4) 22.9kV 일반공급설비 1회선으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계약전력을 증가함에 따라 계약전력이 20,000k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급설비 1회선에 22.9kV 전용공급설비 1회선을 추가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일반공급설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기존 계약

전력 범위 이내로 한다.

- (5) 기존에 22.9kV 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이 계약전력 증가(2만 kW 초과 4만kW 이하)에 따라 22.9kV 1회선을 추가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객소유선로 1회선에 한전 공급선로 1회선을 추가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 (6) 전기사용계약은 1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전력은 공급선로별 수전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 (7) 계량은 전체를 일괄하여 합성계량하며, 합성계량장치는 기본공급약관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라 고객이 설치·소유한다.
- (8) 예비전력은 고객의 희망에 따라 1회선 또는 2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 공급선로는 다른 선로와 Loop 운전되지 않도록 Inter-lock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시 공급선로 2회선에 예비 공급선로 1회선을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예비전력 계약전력은 상시 공급선로에 접속되어 있는 변압기설비 용량 중에서 큰 쪽의 변압기설비 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바.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의 “한전변전소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라 함은 기존 공급설비의 보장 또는 변전소간 부하분리 공사후 공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때, 시행세칙 제68조(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급설비의 보장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고객이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사. “나” 내지 “마”의 규정에 따라 22.9kV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 (1) 공급선로 시설장소가 한전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또는 공급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곤란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 (2)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 154kV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예비전력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정전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공급을 생략할 수 있다.

자.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2호에 의거 계약전력 400,000kW를 초과하는 신·증설 고객이 한전이 인정할 수 있는 최대수요전력 제한장치를 고객부담으로 설치하여 최대수요전력을 500,000kW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154kV로 공급할 수 있다.

- (1) 설비고장 또는 긴급 보수 등의 사유로 정전발생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회선 이상을 설치하여 병렬 운전(다만, 보호협조상 곤란한 경우는 분리 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최대수요전력	공급 회선수		
	상시전력	예비전력	합 계
400,000kW이하	1회선	1회선	2회선
500,000kW이하	2회선	1~2회선	3~4회선

다만, 고객이 정전에 대비하여 스스로의 책임으로 정전 대비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하는 경우에는 예비전력 공급을 생략할 수 있다.

- (2)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는 고객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선당 최대수요전력이 400,000kW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전기사용계약은 1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전력은 교대성 예비설비를 제외한 변압기설비 용량의 합계로 한다.
- (4)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은 약관 제63조(예비전력)에 따라 상시 계약전력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전력 2회선과 예비전력 1회선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예비전력 계약전력은 400,000kW로 한다.
- (5) 예비전력을 포함하여 2회선 이상으로 수전하는 경우, 계량은 전체를 일괄하여 합성계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성계량장치는 약관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에 따라 고객이 설치·소유한다.
- (6)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2호의 “전력계통의 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라 함은 신뢰도 고시기준에 의한 상정사고 시 설비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계약전력 400,000kW 이하 고객의 상정사고 시 설비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 설비과부하 해소를 위한 전력계통의 보강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2. 66kV 신·증설 고객에 대한 공급방안

가. 신설고객에게는 66kV로 공급하지 않는다. 다만, 전력공급설비상 66kV 전압으로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때 66kV 선로정비시에는 한전이 정한 전압으로 수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나. 기설고객으로서 고객이 증설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 66kV 공급설비 용량범위 내에서 증설을 허용한다. 다만, 66kV 공급설비를 22.9kV-Y 전압으로 정비할 경우 1979. 5. 22 이후 증설고객은 증설 전·후의 계약전력 비례로 한전과 고객이 다음과 같이 수전설비 변경공사비를 부담한다.

(1) 고객부담금 = 총공사비 - 한전부담금

(2) 한전부담금 = 총공사비 × 증설전의 계약전력 / 증설후의 계약전력

다. 수전설비 변경에 따른 고객부담 공사비는 66kV 선로 정비공사 착공전에 납부해야 한다.

3. 공급계통의 구성

가. 신·증설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전선로는 원칙적으로 한전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다음의 고객은 필요한 경우 고객소유선로로 공급할 수 있다.

- (1) 66kV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경우
 - (2) 고객이 특별히 희망하고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154kV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하는 고객은 인근의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에 인출개폐장치를 설치한 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력계통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과 협의하여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 인출개폐장치 이외의 지점에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송전선로에서 T분기로 공급할 수 있다.
- (1) 신·증설 전기사용장소 인근을 통과하는 154kV 선로가 주요 계통간선이 아니고 계통보호에 문제점이 없는 경우
 - (2) 한전의 전력공급설비 형편상 T분기 공급이 불가피한 경우
- 다. 전 “나”의 단서에 따라 T분기로 공급하는 경우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1) 1개 선로구간(변전소간)에서 T분기 공급고객의 계약전력 합계는 선로구간 송전용량(90℃ 연속허용 전류)의 75% 이내로 한다.
 - (2) T분기 공급가능한 1고객의 계약전력은 1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50%, 2회선인 경우 송전용량의 25%까지로 한다.
 - (3) 2회선 송전선로에서는 2 T분기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 때 2개 선로가 동시에 투입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를 하고 상시전원과 예비전원을 명시한다.
 - (4) T분기 공급시 필요한 경우 고객은 T분기점에 반송블러킹 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 (5) T분기 공장이 1km 이상인 경우로서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T분기점 부근에 부하개폐능력을 보유한선로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
- ⑤ 22.9kV S.N.W 방식의 공급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실시대상 지역

지중공급지역, 지중공급예정지역 또는 공중전선로 지중화계획에 따라 지중화지역으로 공고된 지역중 22.9kV S.N.W용 전력공급설비의 시설이 가능하다고 한전이 선정한 지역에는 22.9kV S.N.W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2. 공급대상 고객

계약전력이 500kW이상 40,000kW이하인 경우로서 고객이 희망하고 한전의 공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2.9kV S.N.W방식으로 공급 할 수 있다.

제 15 조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 ① 약관 제24조(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확보, 제공) 제1항의 국토해양부령(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전전압	전력수전 용량	확보면적
특고압 또는 고압	1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저압	75킬로와트 이상 150킬로와트 미만	가로 2.5미터, 세로 2.8미터
	150킬로와트 이상 2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2.8미터
	200킬로와트 이상 300킬로와트 미만	가로 2.8미터, 세로 4.6미터
	300킬로와트 이상	가로 2.8미터 이상, 세로 4.6미터 이상

②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한전의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배전함, 배관, 맨홀 등)를 땅속에 설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한전 전기설비의 설치, 보수, 점검 및 조작 등 유지관리를 위한 한전 직원의 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③ 한전 공급설비 설치공간은 해당 건축물 외부의 대지상에 확보,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부 지상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내부에 공간을 확보, 제공할 수 있다.

④ 수전전압이 저압이고 전력수전 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전력수전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표를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하여 확보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전기사용장소내 지중인입선 설치를 위해 시설하는 인입구조물(관로, 맨홀, 저압 접속함, 케이블인입구, 핏트 등)은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설·소유할 수 있다.

⑥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시설·소유 지중개폐장치로부터 타 고객에 대한 연장공급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의 부담으로 예비인출관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한전소유의 예비인출관로를 고객의 부담으로 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설공사비를 고객부담금에서 차감한다.

⑦ 전기사용장소내에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한전공급설비 설치공간 제공협약서를 작성하여 영구보관한다.

제 16 조 【고객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①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66kV 이상의 전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구내 또는 인접한 고객이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2. 고압이나 22.9kV 이하 특별고압으로 공급받고 있는 고객과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이 다르거나 제10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의거 전기사용계약단위가 구분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동의를 얻어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②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전기사용계약은 아래와 같이 각 부분별 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다.

1. 각 부분을 1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

가. 적용범위

(1) 동일 전기사용장소(1건물 또는 1구내)에서 계약종별 또는 회계단위가 서로 달라 변압기를 공용하여 각각 수급거래를 희망하는 고객

(2) 동일구내는 아니나 고객간의 전기사용장소가 인접하여 있고 그 중 대표고객의 공급전압이 66kV 이상으로 동 수전변압기를 공용하여 대표고객의 구외(構外)에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

나. 전기사용계약은 고객별로 각각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의 공급설비와 대표고객의 공급설비와의 접속점으로 한다. 이 때 계약전력 500kW 미만의 공동이용고객은 저압계량할 수 있다.

다. 고객별 계약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변압기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를 공동사용하고 각 고객별로 2차변압기를 단독사용하는 경우 계약전력은 각 고객이 단독사용하는 2차변압기 용량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설비의 특성상 또는 고객간에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할 수 있다.

(2) 사용설비로 계약하는 경우

1차변압기 2차 단자에서 직접 인출하여 공동사용하는 경우의 고객별 계약전력은 각각의 전력량계 2차측의 사용설비 용량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이 때 고객별 계약전력을 합산한 총용량이 1차 변압기 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고객간의 사정으로 사용설비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차변압기 용량의 120%까지로 한다.

라.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고객별 계약설비를 기준으로 하되, 대표고객은 1차변압기를 포함한다.

마. 약관 제25조(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1항 제3호의 “요금체납 해지시 대표고객 및 공동이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 방법”이란 요금미납으로 해지사유 발생시 대표고객 또는 공동이용고객에 대하여 해지시공이 가능하도록 고객부담으로 전용개폐기를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전용개폐기 설치가 물리적·경제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한전이 인정한 경우에는 한전이 고객소유 개폐장치 등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2. 전부를 1전기사용계약으로 체결하는 경우

가. 적용범위

공동이용고객들의 계약종별이 같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서로 연결한 건물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

동사용하는 일반용전력 고객

(2) 공장의 건물이 서로 연접하여 있거나 인접한 2이상의 구내로서 그 사이에 제3자가 전기사용장소를 설정할 수 없는 장소의 고객이 수전설비 설치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전기를 공동 사용하는 산업용전력 고객

나. 전기사용계약은 대표고객과 체결하며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인입선)와 고객 전기설비의 연결점으로 한다.

다. 전기사업법상의 준수사항은 1전기사용장소로 확정된 전체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전기사용계약의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대표고객 및 변경이 있는 공동이용고객은 전기사용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 ④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 부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경우,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는 대표고객과 동일한 유형으로 부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계량점 전압이 저압인 경우에는 공정한 수급거래를 위해 고객의 희망에 따라 최대 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부설할 수 있으며, 이 때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고객이 시설·소유한다. 다만, 한전의 필요에 의할 경우는 제외한다.
- ⑤ 공동이용고객의 공급전압은 대표고객의 공급전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⑥ 자가발전설비로 상시전력을 충당하는 경우로서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나타난 사용 전력량보다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이 많을 경우 그 잉여전력량은 한전이 대표고객으로부터 전력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제 17 조 <삭 제>

제 18 조 【수급지점】

① 전압별 인입시설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전압별	시 설 유 형	수 급 지 점
저 압	•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연결점
	• 지중인입 - 공중·지중지역	• 고객구내 인입선과 인입구배선 접속점
고압 또는 22.9kV 이하의 특별고압	• 공중인입(연접, 공동인입 포함)	• 인입전주의 인입선 접속점
	• 지중인입 - 공중지역 - 지중지역	• 인입전주에 시설하는 개폐기 고객측 단자 접속점 • 전기사용장소내에 당사가 시설하는 개폐기의 고객측 단자 연결점
22.9kV 초과 특별고압	• 공중 또는 지중	• 공급변전소의 인출개폐 장치 고객측 개 폐기의 고객측 단자 또는 고객과 한전이 협약하여 정하는 지점

② 공급설비 유형에 따른 수급지점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전용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변압기설비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대표고객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고객이 시설·소유하는 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한전 전선로와 고객소유 전선로의 분기 접속점으로 한다.
4. 22.9kV S.N.W 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수급지점은 한전에서 시설하는 케이블 분기접속장치 부하측 접속점으로 한다. 다만, 한전 전기공급설비 구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22.9kV S.N.W 변압기 1차측에 고객이 시설하는 개폐장치의 전원측 접속점으로 할 수 있다.
5. 고압 임시공급설비의 수급지점은 제1항의 고압인 경우의 수급지점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고객이 희망할 경우는 “개폐기 고객측단자 접속점”을 수급지점으로 할 수 있다.
6. 저압으로 공급하는 호별계약아파트의 각호와 한전간의 수급지점은 다음의 지점으로 한다.
 - 가. 지중전선로에서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지상설치형 변압기의 2차측 단자연결점
 - 나. 공중전선로에서 지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중전선로와 지중인입선의 연결점 또는 주상변압기의 2차측 단자연결점
 - 다. 공중전선로에서 공중인입선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중인입선과 인입구배선의 연결점
7. 제1항 “표”에도 불구하고 공중지역에서 고객이 저압으로 지중인입을 희망하는 경우 정액등, 가로등 고객과 같이 사용장소가 건물이 아니거나 계약전력 10kW 이하의 소용량 고객인 경우에는 인입전주의 인입선 접속점을 수급지점으로 한다.

③ 약관 제27조(수급지점) 제2항 단서 제8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란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배전선로의 경과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 전기사용장소의 위치 및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제 19 조 【지중공급설비의 시설】

약관 제28조(공급설비의 시설) 제1항 제1호의 “인접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1. 지중화지역으로 선정·공고된 도로에 접한 지역
2. 지중화지역으로 선정·공고된 도로와 교차하는 1블럭 이내의 지선도로에 접하는 지역. 이 때 1블럭이란 도로(이면도로 포함)로 구분하여 획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 20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

① 한전이 인수할 수 있는 고객소유 전기설비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고객과 공용하고 있는 고객소유 선로의 공용부분을 한전의 필요에 따라 인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② 고객소유의 전기설비가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더라도 인수전에 당해 설비의 보강공사비를 고객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설계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한 설비로 인정할 수 있다.

제 21 조 【지중인입선】

- ① 고압 이상의 전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다음 고객의 지중인입선은 예비회선을 시설하도록 권장하되 고객이 시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소재를 전기사용계약서에 명시한다.
 - 1. 공동주택
 -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 3. 기타 한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객
- ② 저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이 공중공급지역에서 고객부담으로 지중인입선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한전의 설계기준에 따라 고객이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5조(한전공급설비 설치장소 제공) 제2항에 의해 저압접속함을 고객이 시설·소유하는 경우 고객은 FRP(섬유강화플라스틱)재질의 접속함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FRP 덮개를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전규격에 적합한 절연고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 22 조 【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 ①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連接引入線) 및 공동인입선(共同引入線)) 제1항의 “연접인입선”이란 1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에서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다른 전기사용장소의 인입선 연결점까지 연결하는 전선을 말하고, “공동인입선”이란 2이상의 고객에게 1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공동사용 부분을 말한다.
- ② 약관 제32조(연접인입선 및 공동인입선) 제2항의 “다른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해 필요할 경우”라 함은 공중 연접인입선 또는 공중 공동인입선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공중 연접인입선 또는 공중 공동인입선은 고객의 승낙을 얻어 한전이 소유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다.

제 23 조 【전용공급설비】

- ① (삭 제)
- ② 약관 제36조(전용공급설비) 제2호는 계약전력 10,000kW 이상 고객에게 적용한다.
- ③ 변전소내에 시설하는 한전소유의 변압기, 인출개폐장치는 전용공급설비에서 제외한다.

제 24 조 【전기계기의 설치기준】

- ① 약관 제37조(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기계기 등의 설치 및 소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고객 변압기설비 공동이용고객 중 저압으로 계량하는 고객의 요금계산에 필요한 전기계기와 동 부속장치(계기용변류기 등)는 한전이 시설·소유한다.
 2. 합성계량장치는 동일 구내에서 동일 회계주체가 동일한 계약종별로 2이상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로서 물리적으로 합성계량을 위한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으며, 합성계량장치를 설치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다.
- ② 약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4항의 “세칙에서 정한 고객” 이란 저압고객 중 계약전력 20kW 이상 고객을 말한다.
- ③ 고객소유의 전력량계를 임시철큐거하는 경우에는 철큐거기간 중에 한전 보유의 참고용 전력량계를 부설할 수 있다.

제 25 조 【전기계기의 정밀등급】

전기계기 및 동 부속장치는 원칙적으로 다음 표에서 정한 정밀등급 이내의 것을 사용한다.

계약전력별	계량방식별	전 기 계 기	조합변성기
계약전력 500kW 미만고객	전력량계	2.0급(보통 전력량계)	0.5급
	최대수요전력계부 전력량계	1.0급(정밀 전력량계)	0.5급
계약전력 500kW 이상 10,000kW 미만 고객		0.5급 (특별 정밀전력량계)	0.5급
계약전력 10,000kW 이상 고객		0.5급 (특별 정밀전력량계)	0.3급

제 5 장 전기사용에 따른 협력

제 26 조 【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 ① 아크로, 전기철도 등에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으로서 플리커나 고조파 (이하 “플리커 등”이라 한다)가 발생하여 다른 고객의 전기사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플리커 등을 검토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플리커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하는 고객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개시 예정일 6개월전까지 한전에 제출토록 해야 한다.
- ③ 플리커 등을 검토한 결과가 다음에서 정한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의 부담으로 보호장치를 시설해야 한다.

1. 플리커(Flicker) 허용 기준치

구 분	허용기준치	비 고
예측 계산시	2.5% 이하	최대전압 변동률로 표시
실 측 시	0.45%V 이하	ΔV_{10} 으로 표시하며 1시간 평균치임

2. 고조파 허용 기준치

가. 공급전압이 66kV 이상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		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		우수 고조파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5	2.3	3	1.9	2	0.8
7	1.9	9	0.6	4	0.4
11	1.3	15	0.2	6	0.2
13	1.1	21	0.1	8	0.2
17	0.8	27	0.1	10	0.1
19	0.7	33	0.1	12	0.1
23	0.5	39	0.1	14	0.1
25	0.5	45	0.1	16	0.1
29	0.4			18	0.1
31	0.4			20	0.1
35	0.3			22	0.1
37	0.3			24	0.1
41	0.3			26	0.1
43	0.2			28	0.1
47	0.2			30	0.1
49	0.2			32	0.1
				34	0.1
				36	0.1
				38	0.1
				40	0.1

주) 종합 고조파 왜형률(THD) : 송전계통에서 3%

나. 공급전압이 22.9kV 이하인 경우

3의 배수가 아닌 기수 고조파		3의 배수인 기수 고조파		우수 고조파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차수 h	고조파전압%
5	3.8	3	3.1	2	1.3
7	3.1	9	0.9	4	0.6
11	2.2	21	0.2	6	0.3
13	1.9	>21	0.2	8	0.3
17	$\{1.36 \times (17/h)\} - 0.16$			>8	$\{(0.15 \times (10/h)\} + 0.15$
19					
23					
25					
29					
31					
35					
37					
41					
43					
47					
49					

주) 종합 고조파 왜형률(THD) : 배전계통에서 5%

- ④ 약관 제39조(전기사용에 따른 보호장치 등의 시설) 제2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고객”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비상전원 공급장치의 설치의무가 있는 고객 및 양어장, 비닐하우스 축산농가, 컴퓨터 관련 산업, 농수산물 가공업 등 정전시 피해 발생 우려가 많은 고객을 말한다.

제 27 조 【역률의 계산】

- ①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대상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 하는 경우의 당월 역률은 설치 전·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2. 계약전력의 증가나 감소, 계약종별이나 공급전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전·후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변경전후로 역률을 구분하여 계산한다.
 3.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를 이상이 있는 월의 역률로 한다. 다만, 고객소유의 계기 부속장치 이상으로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를 3개월간 계속 적용한 경우에는 넷째월분부터 지상역률의 90%와 이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역률의 평균치 중 낮은

것을 당월의 역률로 한다.

4. 제3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전력량계를 교체한 경우 해당월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전월검침일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제3호에 따라 계산한다.

나. 교체일로부터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역률은 신설고객에 준하여 계산한다.

5.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의 해당월 역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기설고객은 무효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나. 신설고객은 우선 지상역률 90%로 계산한 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초 월까지 소급정산 하되, “(2)”의 경우에는 무효전력을 계량하는 전력량계를 설치할 때 까지 지상역률의 90%를 적용한다.

(1) 고장월을 포함한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교체 할 경우에는 교체 후의 평균역률

(2) 고장월을 포함하여 셋째 조정월까지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등을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상역률의 90%

6. 변압기설비 공동이용 고객의 역률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가. 대표고객의 역률

(1)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다.

(2)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 계량된 전체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을 차감하여 계산한 역률을 적용한다.

나. 공동이용고객의 역률

(1)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역률을 적용한다.

(2) 공동이용고객이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고객의 전력량계에 1개월간 누적계량된 사용전력량 및 무효전력량에 따라 계산한 역률을 적용한다.

다.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42조(역률의 계산)에 따라 계산한 대표고객의 역률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대표고객이 주택용전력, 가로등,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28 조 【삭제】

제 29 조 【위약금】

- ① 약관 제44조(위약금) 제1항의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조작(造作)하여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경우 :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요금 상당액과 부정사용분을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요금간의 차액
 2. 한전과 계약한 사용설비 및 변압기설비 이외의 설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가. 전기사용절차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한 경우(무단으로 예비전력 공급선로를 구성한 때에는 그 선로상의 개폐기가 차단(off)된 경우도 이에 포함한다.) : 그 설비를 신설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다만, 이미 납부한 요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액과의 차액
 - 나. 무단으로 전기설비를 증설한 경우 : 증설후 설비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 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다만,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의 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는 대상고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한전과 계약한 계약종별 이외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경우 : 실제 해당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계약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4. 한전과 계약한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전기를 사용한 경우 : 계약 사용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휴지기간에 사용한 계약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계약한 것으로 하여 계산한 요금 상당액
 5. 1주택수가구 요금적용 고객의 가구수감소 신고누락 및 허위신고 : 실제 가구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요금상당액과 기존 가구수에 따라 계산한 요금간의 차액
- ② 위약금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위약금을 계산할 때 그 적용기간, 기기(업종)별 사용시간은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실제 사용한 기간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사용기간 및 시간과 배수적용은 별표 1, 2, 3의 기준을 참고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고객이 설비의 일부를 계약한 종별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증설한 설비가 다른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이 때 계약종별별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종별별 설비비례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3. 전기사용 특성상 부득이하게 배수의 면제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계산할 때 “별표 1”의 기준배수를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4. 전력사용량 및 요금은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하고, 위약조사일과 검침일이 틀릴 경우 최초월과 최종월은 일수 계산한다.

제 30 조 【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 ①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2항의 “요금 이외의 한전에 납부해야 할 금액 등”이란 시설부담금, 위약금, 보증금,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설비 손망실에 따른 설비변상금 등을 말한다.
- ② 약관 제4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의 정지) 제3항에 해당하는 고객은 공급정지 사유의 해소를 요청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시행한다. 다만, 한전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31 조 【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 ① 약관 제15조(고객의 책임으로 인한 전기사용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요금미납으로 해지된 고객이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수수료) 제1항에 따라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의 전제조건인 “해지사유 해소”란 원칙적으로 미납요금 전부를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약관 제46조(전기사용계약 해지 또는 공급정지후 재사용 및 재사용 수수료) 제2항의 재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1. 전력량계가 철거되지 않은 고객
 - (가) 단상 공급고객은 8,000원
 - (나) 삼상 공급고객은 16,000원
 - 2. 전력량계가 철거된 고객
 - (가) 단상 공급고객은 17,000원
 - (나) 삼상 공급고객은 39,000원
 - 3.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1, 2호의 기준에 50% 할증하여 적용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사용수수료를 면제한다.
 - 1. 주거용 주택용전력 고객(약관 제13조(고객의 요청에 따른 해지)에 따라 해지된 고객은 제외)
 - 2.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에 따른 장기미사용 임시해지 고객
 - 3. 기타 고객안내 미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32 조 【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

- ①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요금감액)에 의한 요금감액의 경우 새로 전기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의 감액요금은 당해 월의 1개월 분 기본요금을 대상으로 산정한다.
- ② 최저요금을 적용한 주택용 전력 임시전력(갑) 고객의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 33 조 【설비의 손망실에 대한 배상】

- ① 고객이 고의나 과실로 전기사용장소내의 한전 설비를 손상하거나 망실한 경우에는

배상해야 한다. 다만,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계약전력에 미달하는 용량의 전기계기가 과부하로 소손된 경우
 2. 옥외에 부설한 전기계기가 당해 고객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파손, 망실, 도난된 경우
 3. 건축물 멸실로 인한 전기계기의 망실이나 도난으로 배상을 청구할 고객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4. 변압기가 과부하로 소손된 경우. 다만, 고객이 기본공급약관을 위반하여 전기를 사용한 것이 소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제외
-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정전이 된 경우, 사고 정전시간에 발생한 지장전력대는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 구내사고 등으로 인한 파급사고 및 변압기소손의 경우와 피해복구를 위한 전원측 휴전시간 및 가복구후 정상 복구공사에 수반되는 휴전시간은 제외한다.

제 34 조 【업무협조】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3항의 “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란 다음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호 변경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3. 사업자 주소(住所) 또는 거소 이전(居所 移轉)
4. 법인 대표자 변경
5. 사업종류 변경
6. 사업장 이전
7. 기타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

제 6 장 전기사용의 안전

제 35 조 【전기설비 점검】

- ①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1. 점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새로이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 증가에 따른 사용전 점검
 - 나. 정기점검
 - 다. 기타 고객의 요청에 따른 점검
 2. 전 1호의 “가” 및 “나”의 경우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다”의 경우에는 고객 부담으로 점검한다.
 3. 전 1호 “가”의 점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한전 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하며, “나” 및 “다”의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시행한다.
 4. 점검기관은 전 1호 “가”의 사용전 점검을 완료한 후 사용전 점검필증을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사용전 점검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한다.

5. (삭 제)

6. (삭 제)

- ② 고객이 일반용전기설비의 변경공사(개수공사를 포함한다)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공사가 완성된 때에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전이나 한국전기안전공사에 통지해야 한다.
- ③ 한전은 점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배선도(配線圖)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고객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내에서만 점검한다.

제 36 조 【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 ① 약관 제53조(전기안전을 위한 고객의 협력) 제2항의 “공급설비에 직접 영향을 미칠”이란 고객의 물건이 한전의 공급설비에 근접 또는 접촉하거나 공급설비를 손괴하는 경우 등을 말하고, “물건”이란 고객소유의 발전설비·변압기설비 등의 전기설비와 건물·굴뚝·간판·안테나 등의 건조물 및 수목 등을 말한다.
- ② (삭 제)

제 37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 ①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1항의 “전기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경우”란 다음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고객의 요청이 있고 한전이 공급설비 관리상 한전에서 수탁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저압 고장수리시 당해 고객의 요청이 있고 수리와 동시에 시공할 수 있는 경미한 공사
- ② 약관 제54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 제2항 단서의 “세척에서 정하는 공사”란 테이프감기, 바인드취부, 나사풀기 및 나사조이기 등의 공사를 말한다.

제 7 장 계약종별

제 38 조 【계약종별의 구분】

- ① 계약종별은 그 전기사용계약단위가 영위하는 주된 경제활동에 따라 구분 적용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내에서 동일사용자가 고정된 벽으로 구분된 다수의 구획을 각각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간주하여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계약종별의 결정은 다음의 일반원칙에 의한다.
 1.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가지 이상의 계약종별에 해당하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약관 제65조(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별 계약종별 적용 기준
 - 가. 표준산업 대분류 “A(농업, 임업 및 어업)”의 경우
 -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의 적용대상으로 명시된 고객에게는 농사용전력을 적용한다.
 - (2) 농사용전력 적용대상이 아닌 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나. 표준산업 대분류 “B(광업), C(제조업)”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약관 별표 2의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표준산업 대분류 “D~U”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 라. (삭 제)
 3.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상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본사건물 등과 같이 재화생산활동을 하는 장소와 구분하여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고객의 계약종별은 동 사업체의 산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계약단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4. 휴업중인 고객은 휴업전의, 청산중인 고객은 청산 개시전의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 ③ (삭 제)
-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 및 제59조(산업용전력) 제4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된 시설의 종업원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조시설로서 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미용실, 사무실, 보안용 외등 및 독신자 합숙소(기숙사 포함) 등의 시설을 말하며,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란 주된 시설과 동일한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로서 주된 시설의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 39 조 【주택용전력】

- ① 외교관이 임차사용하는 주택의 경우 임대계약 상대방이 외교관(대사관, 공사관, 총영사관 및 영사관)으로서 전기요금을 동 외교기관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으로 계약종별을 결정하되, 1년 이내에는 계약종별을 변경할 수 없다.

- ② 전기사업법 제62조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1호 단서의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약관 제56조(주택용전력) 제1항 제4호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주택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택용 전력을 적용한다.
 -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제 40 조 【일반용전력】

- ①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의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에 대한 일반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주민등록 전입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내부구조,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일반용 전력을 적용한다.
 - 2.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 3. 업무용도 사용 사실에 대한 입증은 고객이 하여야 하며, 고객의 입증이 없는 경우 주택용 전력을 적용한다.
- ②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제1항 제2호 “가”에 따른 기존 일반용전력 적용 오피스텔에 대한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확인대상 : 기존의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적용 오피스텔 고객
 - 2. 확인기간 : 2011. 1. 1부터 전기사용계약 갱신시까지
 - 3. 확인방법 : 전기사용고객의 소명에 따른 확인(입증자료 및 현장확인 병행)
 - 4. 주거용 및 업무용 오피스텔 판단기준
주민등록 전입여부, 내부구조, 사업자등록 여부, 바닥난방 설치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주거용도와 업무용도가 혼재된 경우에는 약관 제65조(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에 따른다.
 - 5. 전기사용계약 갱신 : 2011. 7. 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전기사용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 ③ 약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 제16조(고객변압기 설비 공동이용) 제2항에 따라 저압 계량하는 300kW이상인 일반용전력 고객은 일반용 전력(갑)을 적용한다.

제 41 조 【교육용전력】

- ① 교육용전력은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에 열거된 법률에 의거 설치한 교육시설로서 다른 용도의 시설과 명확히 구분된 경우 적용한다.
- ② 교육용전력은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시설인 교실(강의실), 도서실, 실험실습실, 학생회관 등 교육기본시설과 교육시설주체가 전기사용계약당사자인 경우로서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중 교육본연의 목적 달성과 관련된 수영장, 체육관, 강당 등의 지원시설 및 부설연구소 등 연구시설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법인이 직접 운영하며 교육과정상 필수시설로서 사정상 구외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농대 부속립 등 부속시설에 대하여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 ③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1항에서 정한 적용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 포함)·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 포함)·대학(단과·종합, 대학원 포함),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외국인학교, 대안학교, 영재학교, 소년원학교, 예술학교, 신학교 등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학교).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각종 학원은 제외한다.
 2.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학력인정 학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따라 운영하며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학습관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및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사립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한 보육시설(다만, 주거용 시설은 제외)
 5.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다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된 독서실은 제외한다.
 6.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가. 국립박물관·국립미술관,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 대학박물관·대학미술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
 - 나.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등 유사박물관 시설로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박물관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재위원회로부터 박물관으로 인정받은 시설

7. 과학관 육성법에 따른 과학관

국립과학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된 과학관(종합과학관, 전문과학관)

- ④ 약관 제58조(교육용전력) 제3항의 부대시설이라 함은 후생시설 및 교육목적 수행과 관련된 부속시설을 의미한다. 다만, 약관 58조(교육용전력) 제3항의 적용에 있어 부대시설로 인정되는 후생시설 중 학교급식법에 의해 초·중·고교 구내에서 위탁급식업체 명의로 급식을 위해 사용하는 전력 또는 학교구내 학생기숙사에 사용하는 전력에는 별도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여 계약한 경우에도 교육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2 조 【산업용전력】

- ① 산업용전력의 일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산업에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5조(약관 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산업용전력적용을 인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산업용전력은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분류에 관계없이 해당 고객이 실제 수행하는 경제활동에 따라 결정한다.
3. 계약종별은 전력의 사용주체보다는 전기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하므로, 사용주체가 관공서, 군부대 등 일반용전력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용도가 광업·제조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4.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약관 제51조(업무협조) 제4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고객이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② 특성에 따른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의 “기타사업”에 대한 산업용전력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동일한 기타사업고객이 계약종별을 변경한 후 전기사용 용도의 변경없이 1년 이내 다른 산업용전력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할 수 없다.

가. 수도사업

“수도사업”이란 수요자에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취수·집수·정수 및 급수를 하는 산업활동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일반상수도”란 수도법에 따라 수도사업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운영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 (2) “간이상수도”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로서 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인근에 상수도가 없는 지역의 비영리 급수시설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주거지역에서 2호 이상의 주민이 공동 관리·운영하는 시설

2) 고지대 고객이 저지대 일반상수도를 수원으로 가압장을 설치하여 식수로 사용하기 위한 급수시설

3) 학교, 군부대의 급수시설

4) 기업체, 종교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급수시설

(나) 일반상수도가 시설되어 있으나 급수량 부족으로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하여 일반상수도와 같이 사용하는 급수시설

(3) 고객이 희망하는 아파트 상수도 가압설비

이 때 “아파트”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포함한다.

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35200)”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1) 가스공장에서 연료 및 난방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2)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산업활동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실험 및 공작시설을 갖춘 고객이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이 인·허가, 승인 등을 해 준 인정직업훈련원 인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설립허가증,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등을 제출하는 고객을 말한다.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발전소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계통병입하기 전까지 발전소시운전에 사용하는 전력, 발전기 보수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및 발전소 기동전력을 말한다.

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은 건설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전력에 대하여 적용하되, 동일 구내의 사무실 등 부대설비에 대하여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처리 전단계의 분리, 분해활동 등과 동일구내의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해체재활용 사업장의 산업용전력 적용에 있어서 단순히 자동차해체재활용 대상 차량을 수집하는 기능을 갖는 자동차해체재활용 영업소는 제외한다.

아.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서 하천의 건천화방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가압펌프장은 하수도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로 보아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2. 동일 시멘트 제조업체로서 유통구조의 합리화와 수송난 완화를 위해 공장의 일부가 지방에 분산된 경우에는 분공장(싸이로 또는 포장설비)도 본공장의 시멘트 생산과정에 준해 분류한다.

3. 산업용전력 고객으로서 산업운영에 직접 필요한 공업용수 양수장을 입지조건상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였을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하고, 양수장이 동일구내 이외의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도 주된 업종과 같은 전기사용계약단위로 하

는 것이 타당할 경우에는 동일 전기사용장소로 간주하여 1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4. 별도의 전기사용장소에 설치한 우유집유소

가. 낙농품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10501)”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나. 낙농사업체(축협, 낙농업협동조합 포함)가 운영하는 우유집유소(수유, 계량 및 냉각처리)는 “농사용을 적용하지 않는 농업, 임업 및 어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5.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업에는 다음에서 정한 산업활동 유형에 따라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산업 활동 유형 별	계약종별
1. 철도차량, 선박, 항공기를 전문으로 수선하는 시설	산업용전력
2.“1”이외의 기계 및 장비수선 전문사업체의 구분은 수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계장비의 부속품을 직접 제조하여 수선하는 경우로서 조립능력을 갖추고 있는 고객	산업용전력
3. 가정용 기기 및 장비, 가정용품, 자동차 및 기타 소비자용품의 수선을 주로 하는 사업체	일반용전력

6. 기계장비 조립설치 전문업

가.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연관, 살수기,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적이나 각종 구조물의 규격부품 및 구성품을 건물이나 건축용지 위에 조립설치하는 산업활동은 건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나.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및 기타 사업체에 기계 및 장비의 조립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립사업체에는 그 설치 또는 조립하는 품목을 제조하는 동일 업종의 제조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다만, 대형 가전기기(스토브 및 레인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설치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7. 제빙 또는 냉동업을 하는 고객이 당해산업 운영상 필요한 냉장실을 이용하여 자기 제품 보관 및 타인제품 위탁보관을 같이 할 경우에는 냉장실을 포함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으나, 타인의 제품만을 위탁보관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8. 자가 또는 조합(산림조합 등) 단위로 채취한 떡갈잎을 자가 또는 조합단위로 직접 건조·조제·포장하는 고객은 임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중 행정안전부 지정으로 행정관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는 산업용전력(갑)을 적용한다.

10. 임업시험장의 솔잎혹파리 천적배양 및 실험시설 등은 산림보호 및 병충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으로 분류되므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1. 누에 품종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잠종연구소, 국공립 잠종장에서 품종개발과 보급 및 개발품종의 보존을 위한 사육에 사용하는 전력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12. 한국표준산업분류 제9차 개정(2008.2.1)에 따라 표준산업 대분류가 “제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이동한 다음의 산업은 시행세칙 제38조(계약종별의 구분) 제2항 제2호 “다” 목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전력을 적용한다.

- 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383(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 해당하는 산업
- 나.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581(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세세분류 “59201(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에 해당하는 산업. 다만, 인쇄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신문·잡지·서적 등을 발행 또는 출판하는 산업활동은 산업용전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약관 제38조(전기계기의 설치기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세칙 제16조(고객변압기설비 공동이용) 제2항에 따라 저압 계량하는 300kW이상인 산업용전력 고객은 산업용전력(갑)을 적용한다.

제 43 조 【농사용전력】

- ① 농사용전력(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1호의 “양곡”이란 사람이 양식으로 사용하는 곡식류의 총칭으로 쌀, 보리, 밀, 콩,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류 등을 가리킨다.(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10 해당산업)
2. 농업 및 생활용수를 혼용 저장·공급하는 방조제시설은 주된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시 설 목 적 및 용 도		계 약 종 별
주 기 능	부 수 기 능	
관개용수문조작	생활용수공급	농사용전력(갑)
생활용수확보 수문조작	농업용수공급	산업용전력
발전용수확보 수문조작	다목적용도	일반용전력

- ② 농사용전력(을)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 60조(농사용전력) 제2호의 “육묘(育苗)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1123’에 해당하는 산업으로서, 노지 또는 시설에서 농작물의 씨(種子)를 심어 다른 장소로 옮겨심기 전까지 재배하는 것(씨를 심어 이를 받아시켜 모종을 만들어 내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버섯종균생산을 포함한다. 단, 임업용 종묘생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02011’ 해당산업으로서 임업으로 분류되므로 제외한다.
2.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2호의 “전조(電照)재배”란 전기의 빛을 이용하여 인공적으로 농작물 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버섯 등과 같이 음지에서 재배하는 시설작물일지라도 전조재배에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하나, 작물재배와 무관하게 재배장소에서 사람이 재배활동상 사용하는 조명등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4. 농작물재배에 있어 주된 전력사용이 전조인 경우에는 당해 농작물에 사용되는 양·배수펌프용 전력에도 농사용전력(을)을 적용한다.

③ 농사용전력(병)의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에서 정한 “농작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011”, “축산업”이란 소분류 “012”, “수산물양식업”이란 세세분류 “03211, 03212, 03213”, “임산물”이란 세세분류 “02030”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하며, “양곡”이란 제 1항 제1호를 말한다.

2. 수산물양식업과 해상양식장 운영 고객이 해상에 인접한 장소에 설치한 육상사료저장고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목적상 양식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고객으로 유료낚시터, 판매보관소, 수산동식물의 가공 및 유통과정의 설비 등

나. 시설형태상 타용도의 보조시설인 음식점의 보관(수조)시설, 관상용 연못, 관상용 수족시설 등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냉동·제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하나,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소유권자와 운영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아닌 경우

나.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로서 단위조합별 또는 단위 어촌계가 공동소유 운영하는 경우

다.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다른 고객(기관, 협회, 조합 등)과 합동소유 운영하는거나 일부 출자한 제빙냉동의 경우

※ 농수산물 관리고객에 대한 적용 계약종별

구 분		생 산 자 (自己)	수탁(他人의 물품)
농 산 물	저온보관	농사용전력(병)	농사용전력(병)
	건 조	농사용전력(병)(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수 산 물	저온보관	수협, 어촌계: 농사용전력(병)	수협, 어촌계: 농사용전력(병)
		기타 : 산업용 전력	기타 : 산업용전력
	건 조	농사용전력(병)(생산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조합대행 및 공동건조 포함)	산업용전력
	제빙·냉동	수협, 어촌계: 농사용전력(병)	수협, 어촌계: 농사용전력(병)
기타 : 산업용전력		산업용전력	

4. 위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을 건축하고 어촌·어항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킨 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단독 운영하는 수산물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에는 농사용전력(병)을 적용한다.
5. 축산업 운영에 직접 필요한 축산분뇨(공동)처리시설을 동일 구내에서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하거나, 입지조건상 축사와 인접하여 설치하고 별개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공급받을 경우에도 농사용(병)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6. 가축분뇨(공동)처리장의 주시설은 가축분뇨저장시설, 소독시설, 발효시설, 가공시설, 원료분쇄기, 포장시설, 정화방류시설 등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샤워실 등은 제외된다.
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의 주시설은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시설,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농작물(양곡 제외) 및 임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신선편이시설, 폐기물처리장,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8. 굴껍질처리장의 주시설에는 세척시설, 탈각시설, 굴껍질 분쇄시설 등 굴껍질을 처리하는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 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굴껍질처리장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9.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주시설에는 집하시설, 선별시설, 세척시설, 절단 등 단순가공, 품질검사시설, 포장시설 등 수산물을 상품화 하는데 필요한 주요 공정상의 시설을 말하며, 사무실, 식당, 위판장, 오폐수처리시설, 가공시설,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 등은 제외된다.
다만, 수협 또는 어촌계가 단독소유 운영하는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FPC)의 제빙·냉동시설 및 저온보관시설은 주시설에 포함된다.
10. 약관 제60조(농사용전력) 제3호 라목의 “생산자단체”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정의에 따른다.
11. 농업 교육기관의 실험실습설비는 독립법인 또는 별개 회계단위를 구성하는 경우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보아 농사용전력을 적용하고, 동일회계주체로서 실험실습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교육기관과 동일한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교육기관과 동일회계주체이나 그 생산물의 일부나 전부를 외부에 주기적으로 판매하고 수입의 전부를 교육재정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개 전기사용계약단위로 구분하여 농사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4 조 【가로등】

- ① 약관 제62조(가로등) 제1항의 “도로·교량”이란 일반대중이 통행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도로(고속도로, 고가도로, 지하차도, 지하보도, 터널, 아파트구내도

로 포함)와 교량(육교 포함)을 말한다.

- ②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이란 뒷골목 보안등, 방향표시등, 터널 조명등,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조명등, 고속도로 체인지·고속도로 진출입로·휴게소 진출입로의 차량유도등(안개등), 점멸등 등의 전등, 버스(택시) 승강장에 설치된 교통 안내시설 및 조명등으로서 상업적 광고기능을 겸하지 않은 시설물을 말하며, “소형기기”란 도로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거나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설치한 총 용량 1kW미만의 교통신호제어기, 신호위반단속기 등의 도로교통관련 설비를 말한다.
- ③ 지하상가의 통로부분에 대한 조명용 전등은 상가부분과 별도로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로등(을)을 적용할 수 있다.
- ④ 가로등(갑)은 자동점멸장치를 부설하여 가로등 공급시간에만 점등토록 해야 하며, 설비의 특성이나 경제성 등의 사유로 자동점멸장치 시설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점멸스위치를 부설하고 점·소등책임자를 정해야 한다.
- ⑤ 철도건널목의 경보장치만을 별개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분리한 경우에는 가로등 요금을 적용한다.
- ⑥ 다음 각호와 같이 약관 제62조(가로등)의 가로등으로 볼 수 없는 설비에 대해서는 가로등 설비와 분리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한다.
 - 1. 도로, 터널, 교량 등의 통행료 징수를 목적으로 설치한 설비
 - 2. 광고용 전등, 공중전화 부스용 전등, 휴게소 외곽등 등 가로등이외 용도의 설비
- ⑦ 사용설비 용량이 1kW미만인 가로등(갑) 고객이 계량방식에 의한 요금부과를 희망하고, 한전이 전기계기 설치 및 검침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기계기를 설치하여 가로등(을)을 적용할 수 있다.

제 45 조 【예비전력】

- ① 예비전력(갑)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의 사정으로 예비전력의 공급변전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계속하여 예비전력(갑)을 적용하며, 예비전력(을)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에게 한전측 사정으로 예비전력 공급변전소가 변경될 경우 고객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고 상용전력을 공급하는 변전소로 변경될 경우 예비전력(갑)을 적용한다.
- ②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4항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 22,900V를 초과하거나 수전설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말한다.
- ③ 예비전력 공급고객에 대한 요금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예비전력에 대한 선택요금은 상용전력분의 선택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되 예비전력의 공급전압이나 계약전력이 상용전력과 다른 경우에는 고객이 희망하는 선택요금을 적용한다.
 - 2. 대표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동이용고객에게도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예비전력을 공급받지 않도록 설비를 구성한 경우에는 예비전력 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3.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예비전력 기본요금은 상용전력의 요금적용전력을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 비율로 조정하여 산정한다.
- ④ 미군고객에게는 예비전력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⑤ 약관 제63조(예비전력) 제8항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란 기존 공급전압보다 상위전압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이 기존공급선로를 이용하여 예비전력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경우 및 기존 예비전력 공급선로의 고장·보수 등의 사유로 별도의 예비전력 공급을 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⑥ 예비전력을 공급중인 고객소유 전기설비를 한전의 사정으로 인수하는 경우 예비전력 요금의 적용은 고객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6 조 【임시전력】

- ① 약관 제64조(임시전력)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임시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은 상시전력과 동일한 기준으로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설계시설부담금과의 차액을 정산한다. 다만,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전력 등의 경우와 같이 임시전력 사용기간 종료후 상시전력으로의 전환이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전력 사용기간을 2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시설부담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 ② 상시로 전력공급설비를 갖추어 놓고 일정기간에 한해 계속 반복 사용하는 고객에게는 임시전력을 적용할 수 없다.
- ③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계약한 전기사용장소 및 계약전력의 범위내에서 전기안전에 문제없이 임시전력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전력 신청없이 기존 전기사용계약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건설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변압기설비(이하 “상시설비”라 한다)를 시설하여 건설용전력을 사용하거나 건설기간 중에 상시설비가 준공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상시용도를 기준한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1. 적용대상은 건설용 전력을 사용하는 고압 이상 고객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고객으로 한다.
 - 가. 전기사용 신청인이 건축주이어야 한다.
 - 나. 건축설계서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상시 수전설비를 갖추고 한전의 상시공급설비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아야 한다.
 2. 상시수전설비의 사용전 검사필증 제출에 따라 현장조사후 송전일부터 상시 계약종별을 적용하고, 임시전력 사용기간중에 상시 수전설비가 준공된 경우에는 임시전력 해지일을 상시전력 수급개시일로 한다.
 3. 건축허가서상의 건물용도를 기준으로 상시계약종별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고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일반용전력을 적용한다.
 4. 건설용 전력을 상시계약종별로 공급받은 고객에게 건축물 준공후 상시 계약종별

변경으로 요금면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간중 사용전력에 대한 임시전력 요금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고객이 부담한다.

- ⑤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동일용도의 건물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용전력을 적용한다.
 - 1.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용전력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재건축하기 위해 동일 공급방식 및 계약전력으로 기존의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 1개 전기사용계약에 한해 주택용전력을 적용할 수 있다.
 - 2. 주택철거 및 건물준공에 따른 계기 등의 이설은 약관 제35조(인입선 등의 위치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재건축 건물에 공급할 때에는 사용전점검후 적합할 경우에 한하여 송전한다.
 - 3. 재건축을 위해 주택용전력을 임시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고정된 배전반시설 및 안전유무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건물철거후 전기계기를 방치하여 전기안전의 위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정지할 수 있다.
- ⑥ 임시전력 사용고객에 대해서는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에 따라 보증을 설정하되 보증 설정기준은 제61조(요금의 보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⑦ 고압으로 공급받는 계약전력 500kW미만 고객은 수전변압기를 설치하여 저압계량 할 수 있으며, 공급전압은 수급지점 전압으로 하고 변압기 손실량은 사용량에 가산한다. 이 경우 수급지점이 변압기 1차측이므로 자가용전기설비 고객으로 전기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46조의2 【2 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 ①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본문의 단서 제1호는 1 전기사용장소에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고 전기사용자가 1인으로서 물리적·경제적으로 전기사용계약단위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 적용한다.
- ② 약관 제65조 (2이상의 계약종별이 있을 경우의 계약종별 적용) 표의 단서 제2호의 “주목적이 농업활동인 관리사”란 농작물 도난방지, 농기계보관, 휴식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하며, 상시 주거시설은 제외한다.

제 8 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제 47 조 【삭제】 (2008. 12. 1)

제 48 조 【요금의 계산】

- ①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균사용량” 계산은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
- ②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의 단서 및 약관 제67조의 2(5인 이상 가구 등 주택용

전력 요금의 계산)에 의한 요금적용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란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독립세대의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주민등록표상 2세대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의 합계가 5인 이상인 경우 포함)를 말한다.
 2. <삭 제>
 3.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관련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4. 단일계약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문서로 통보한 호별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 중 동 시행규칙 별표7에 의한 발전소(비상용예비발전설비 제외)를 설치한 고객은 호별 평균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한다
 5.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호흡기장애”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한 가정산소치료 세부인정기준을 따르며, “희귀난치성질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질환 중 근육병, 다발성경화증, 유전성운동실조증, 뮤코다당증, 부신백질영양장애를 말한다.
- ③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4항의 적용을 받는 종합계약아파트 고객의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한 전력량요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4항 단서의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공동설비 중 아파트 관리주체와 다른 회계주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며 전기배선이 회계주체별로 분리된 공동설비(승강기, 중앙공급식 냉·난방설비,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필수 부대시설은 제외)의 사용전력량에 대한 요금
 - 나. 아파트 관리주체와 다른 회계주체의 공동설비에 대한 전기배선 분리공사 등의 사유로 한전에 할증요금 적용개시 연기를 문서로 요청한 아파트 고객의 요금 (1회에 한하여 요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3개월분 범위내)
 - 다. 관련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아닌 고객으로서 주된 용도가 주거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2. 월간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에 대해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할증요금 부과를 예고하고, 첫번째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거나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할증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호별 공동설비 사용전력량” 산정을 위한 적용호수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서에 명시된 호수를 기준으로 한다.
 3. 동일고객이 마지막 할증요금을 부과한 달부터 1년 경과 후에 할증된 요금단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전 2호에 따른다.

4. 할증요금은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에 따라 결정된 사용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5. 고객변동에 따른 할증요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신설 또는 해지시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 요금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 계약종별 변경시
계약종별 변경으로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 적용대상으로 하며, 할증요금 적용 대상고객이 제외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다. 요금계산방법 변경시
단일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종합계약방법으로 변경하여 할증요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변경방법 적용월의 다음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 적용대상으로 하며, 종합계약방법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단일계약방법으로 변경하여 할증요금 제외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방법 적용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라. 명의변경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월에는 할증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할증요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 마. 계절이 변동될 때의 각 계절별 초과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하지 아니하고 사용일수의 비례에 따라 산정한다.
- ④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5항의 “주택”이란 1전기사용장소내의 순수주거용 주택(상가부주택 포함)에 주택용전력으로 공급하는 전기사용계약단위를 말하며, “가구”란 1전기사용장소내에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주민등록표 작성단위로 독립취사하는 독립세대를 말한다.
- ⑤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1호에 의한 기본요금 50% 감액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정액제 고객은 제외한다.
 2. 전기사용 개시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로 인하여 일수계산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 후 50% 감액한다.
- ⑥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고객의 전기요금 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이사·사망·수급해지·시설의 휴지 또는 폐쇄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액한도는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감액대상	감액기준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해당월 전기요금 (월 8,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사목	해당월 전기요금 (월 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2호 바목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월 12,000원 한도)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일반용전력 적용고객)	해당월 전기요금의 20%
약관 제67조 제6항 제3호(주택용전력 적용고객)	해당월 전기요금의 21.6%

- ⑦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7항에 따라 선택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다른 선택요금으로 변경할 수 있다.
1. 계약종별을 변경시키는 경우
 2. 계약전력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3. 명의변경, 업종변경 등의 경우로서 한전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계절 또는 시간대 구분 변경, 시간대별 요금제 적용으로 변경되는 경우
- ⑧ 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 제1호 및 제7호의 월간 최저요금을 적용하는 월에는 최저요금을 기본요금으로 한다.
1. 최저요금 적용고객에 대하여 약관 제48조(중지 또는 제한에 따른 감액요금) 제1항,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6항 및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에 따른 전체 요금감액은 최저요금 범위내에서 감액한다.
 2. 고압수전아파트·1주택수가구 적용고객의 개별세대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 재공급 또는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로 요금계산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⑨ 약관 제67조(요금의 계산) 제11항에 따른 계절별 요금 구분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격검침하는 100kW이상 고압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계절변동일을 기준으로 중간검침을 실시하여 계절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 후 별표1(월간전기요금표)에 따라 계절별 요금을 구분계산한다.
 2. 제1호 이외의 고객의 각 계절별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산정하여 계절별 및 시간대별 요금을 별표 1[월간전기요금표]에 따라 구분 계산한다.

제 48 조의 1 【초과사용부가금】

- ①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1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에 대하여 월간 450시간을 초과하거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 증가를 신청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나, 초과한 첫 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하거나 마지막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달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초과 하는 경우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2.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2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450시간 초과사용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사용 설비용량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지 않는 다음의 고객

- (1) 가압상수도
- (2) 비상재해복구시설
- (3) 사설독서실
- (4) 자동판매기운영업
- (5) 무선기지국 및 24시간 편의점 등 이와 유사한 고객
- (6) 위 (1) ~ (5) 이외의 고객으로서 현장조사 결과 전기사용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한 고객

나. 신설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 고객의 신설 또는 해지 당월 요금

3.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은 협정사용량 등 정상적인 계량 실적치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하며,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초과사용부가금은 전력량계의 고장 등으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없는 월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고객변동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시

전력량계의 교체 또는 철거에 따라 초과사용부가금 적용기준 변경시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변경된 기준에 따른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나. 계약전력 증가 또는 감소시

계약전력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부터 변경된 계약전력을 기준으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 전기사용용도 변경시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제외고객이 전기사용 용도의 변경으로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적용대상으로 하며, 450시간 초과사용부가금 적용 대상고객이 제외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공급전압 변경시

고압 이상의 고객이 저압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하며, 저압고객이 고압 이상의 고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마. 명의를변경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월에는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초과사용부가금 적용대상으로 한다.

바. 계절이 변할 때의 각 계절별 초과 사용전력량은 중간검침을 실시하지 않고 사용일수 비례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5.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과금) 제1항 단서의 “세칙에서 정한 고객” 이란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2항의 적용을 받는 고객 중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 받는 계약전력 20kW 이상의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을 말한다. 다만,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확인할 수 없는 격월검침 고객은 제외하며,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한전과 계약전력 증설을 약정하고 2012년 9월 30일까지 그 증설약정을 이행한 고객은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3항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 적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에는 고객에게 계약전력을 증설토록 안내하고 초과사용부가금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번째 달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하거나 최종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 월로부터 3년 이내에 최대수요전력이 다시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전력을 초과한 해당월분 요금에 대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을 부과한다.
 2. 상용전력과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이 다른 경우로서 예비전력의 최대수요전력이 예비전력의 계약전력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예비전력(갑)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5%(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2%), 예비전력(을)은 해당 계약종별 기본요금 단가의 10%(고객소유선로로 공급받는 고객은 6%)를 초과사용부가금으로 부과한다.
- ③ 제1항 제5호 단서 후문의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1. 2012년 4월 검침분 이후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의 청구를 예고받거나 청구받은 고객이 계약전력의 증설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일이 속하는 검침월분의 직전 검침월분부터 2012년 9월 검침분까지 발생하는 초과사용부가금의 청구를 유예한다.
 2. 2012년 3월 검침분에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초과사용부가금을 청구받은 고객이 2012년 4월 30일까지 계약전력의 증설을 약정하는 경우에는 2012년 3월 검침분부터 2012년 9월 검침분까지 발생하는 초과사용부가금의 청구를 유예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전력의 증설을 약정한 고객이 2012년 9월 30일까지 그 증설약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청구유예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다.
 4.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계약전력의 증설을 약정한 고객이 2012년 9월 30일까지 그 증설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유예한 초과사용부가금을 그 다음 달 요금에 합산 청구한다.
 5. 제3호의 “증설약정을 이행하는 경우”란 2012년 9월 30일까지 증설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끝내고 송전이 완료된 경우를 말한다.
 6. 고객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전력 증설 약정일이 한전에서 정한 기한보다 늦

어지거나, 외선소요 공사 수반, 전력량계 교체업무 집중 등 한전측 사유로 송전이 지연되는 경우 등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설약정 체결 또는 증설약정 이행 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9 조 【요금적용전력의 결정】

① (삭 제)

②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감소일 전일까지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감소일 이후는 감소전 최대수요전력에 대한 예상 최대수요전력과 감소일 이후의 최대수요전력중 큰 것으로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이 때 예상 최대수요전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예상 최대수요전력} = \text{감소전 최대수요전력} \times \frac{\text{(가) 감소후 계약전력}}{\text{(나) 감소전 계약전력}}$$

③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설치한 고객이 계약전력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되, 계약전력 증가 당월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결정한다.

1. 계약전력 증가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클 경우에는 증가 전·후로 구분하여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하고, 약관 제 80조(일수계산)에 따라 기본요금을 일수계산한다.
2. 계약전력 증가후의 최대수요전력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중 계약전력 증가일까지의 최대수요전력보다 작을 경우에는 약관 제 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의 기간 계산은 약관 제70조(요금의 계산기간)의 검침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전기사용자의 명의 또는 업종을 변경할 경우 요금적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전력의 변경에 관계없이 명의 또는 업종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일에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경월의 기본요금을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때 변경전은 변경할 때까지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변경후는 변경 이후 새로 시현되는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항에 따라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2. 명의변경은 전기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이고, 업종변경은 사업자등록증의 업태가 변경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이상 변경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시에는 다음과 같이 요금적용전력을 결정한다.

1. 고객소유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또는 시간대구분 전력량계의 고장으로 유효한 최대수요전력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한전소유 참고용계기를 고장월 또는 임시철거하는 검침월부터 3개월까지 부설할 수 있다. 다만, 한전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고객소유의거래용계기 부설시까지 참고용계기를 계속 부설할 수 있다.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을 새로 설치한 후 최초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의 50% 해당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되, 계기 부설후 유효하게 시현된 1개월간의 최대수요전력을 기준으로 고장기간의 요금을 정산한다.
3. 계약전력 감소 또는 증가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계약전력 변경 비율로 고장월 포함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고장 직전월분중 최대수요전력에 대하여 수정최대수요전력을 산출한 후, 동 수정최대수요전력을 고장기간의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4. 해지후 동일고객이 재사용한 후 최초 검침시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⑥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의 임시철거시 업무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약관 제68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5항 제3호는 한전소유의 전력량계를 시설한 고객과 한전 귀책사유로 3개 조정월을 경과한 고객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고장, 시험 등으로 임시철거후 재설치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최초검침시 다시 고장일 경우에는 재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임시철거기간의 계속으로 처리한다.
3. 시험 등을 위하여 임시철거한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의 시험결과 고장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시철거월에 고장인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정산한다.

⑦ 변압기설비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전력 결정

가.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은 전체 계약전력에서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동이용 고객이 심야전력(갑)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는다.

나. 공동이용 고객의 계약전력이 비정상적으로 산정되어 “가”의 적용이 비합리적일 경우에는 각 고객별 2차 변압기 또는 사용설비를 조사하여 전체 계약전력

을 균분하여 다시 결정한다.

2. 전력량계 유형별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 조정

가.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이 동일유형의 전력량계를 설치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최대수요전력 및 사용전력량을 각각 차감하여 조정하고, 동일유형전력량계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계량점 전압이 고압 이상인 공동이용고객이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부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대표고객과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 비율로 안분하여 조정한다.

공동이용고객 유형	대표고객 최대수요전력 (공동이용고객 D/M 미설치)	대표고객 사용전력량 (대표고객이 시간대 구분계기 설치)
• 24시간 계속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상주노동, 통신, 방송중계소, 신호등 등]	•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 대표고객의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시간대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 야간에만 주로 전력을 사용하는 고객[가로등, 경비초소 등]	•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 대표고객의 야간시간대(18:00~09: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 심야전력(갑)	•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하지 않음. 다만,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이 과다 시현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조정	•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차감
• 기타[주택용, 일반용(갑), 산업용(갑), 임시전력 등]	•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 대표고객의 전력량계에 시현된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 심야전력(을)	•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이 기본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월은 차감하지 않음	• 경부하시간대 : 공동이용고객의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차감 • 기타 시간대 : 대표고객의 기타시간대 (09:00 ~23: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 일반용(을), 산업용(을) • 전기자동차 충전용설비	•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을 차감. 다만, 공동이용고객의 사용량이 없는 경우 계약전력의 50%를 차감	• 경부하시간대 : 공동이용고객의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을 차감 • 기타 시간대 : 대표고객의 기타시간대 (09:00 ~23:00)의 시간비율로 공동이용고객의 사용전력량을 배분하여 차감

나. 공동이용고객의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대표고객의 최대수요전력에서 공동이용고객의 고장직전 3개월간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의 평균치를 차감한다.

다. 설비의 변경없이 약관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른 전기사용계약단위의 분리로 대표고객의 계약전력이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예상최대수요전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⑧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전기철도사업 중 열차운행용 전기사용고객에 대해서는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의 30%미만 여부에 관계없이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2. 최대수요전력은 각 수급지점의 전철변전소별로 시험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각 수급지점의 전원측의 사유로 정전이 발생(전철사업고객 요청에 따른 정전은 포함하되, 이 경우 정전시간이 15분이상 지속)한 경우에는 정전 전철변전소와 정전으로 인한 전력공급계통 변경으로 최대수요전력에 영향을 받은 인근 전철변전소의 당월 최대수요전력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가. 정전 전철변전소 : 정전당월에 시험된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 나. 정전 인근 전철변전소 : 정전시간대를 제외한 당월중 최대수요전력으로 한다. 다만, 전철 이용승객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전철운행이 종료된 이후에 전력공급계통을 원래의 전력공급계통으로 재변경하는 경우에는 처음 도래하는 전철운행 중지시간까지를 정전시간으로 본다.
 3. 2002. 1. 15 이전에 호선단위로 전기사용장소를 확정하여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전기철도 사업고객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각 전철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의 합계치로 하며, 공급선로 정전시 전철변전소의 최대수요전력 결정은 "2"의 단서를 준용한다.
- ⑨ 지하철구내 임대점포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지하철 관리주체와 임대점포별 최대수요전력, 요금적용전력 및 사용전력량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지 하 철 공 사	임대점포
최대수요전력	• 각 공급변전소별 최대수요전력에서 임대점포별 계약 전력 합계를 차감	-
요금적용전력	• 직전 12개월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중의 최대수요전력	• 임대점포별 계약전력
사용전력량	• 각 공급변전소별 사용전력량에서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을 차감	• 임대점포별 사용전력량

- ⑩ 휴지·재공급 고객의 요금적용전력은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검침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검침당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이 때 전기설비 점검을 위하여 1개월 이내로 사용할 경우를 포함한다.
 2. 재공급후 최초 검침일에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기용변성기, 계기용변류기 등이 고장인 경우에는 고장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중의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간의 최대수요전력이 없거나 계약전력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휴지전 요금적용전력을 우선 적용하고, 유효하게 시험된 최대수요전력을 요금적용전력으로 하여 소급 정산한다. 이 경우 고장기간이 3개 조정월을 경과하거나 재공급후 3개 조

정월 이내에 휴지함으로써 유효하게 시현된 최대수요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소급정산하지 않는다.

제 50 조 【검침일】

-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검침하기 위해 방문한 날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 ② 약관 제69조(검침일) 제3항에 따라 검침하지 않은 달은 정기검침일에 검침한 것으로 본다.

제 51 조 【요금의 계산기간】

- ① 전기공급을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직후 정기검침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전기사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침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 ② 정액제요금 고객의 경우에는 그 고객이 속하는 검침구역의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 ③ 기록형전자식계기를 설치한 고객으로서 검침일이 말일인 경우에는 전월 정기검침일 익일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을 검침기간으로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요금계산기간을 정한 고객이 전기공급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개시일부터 정기검침일까지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 익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를 요금계산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한다.

제 52 조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의 계량】

- ① 고객의 부재 등으로 검침하지 못한 달의 사용전력량은 원칙적으로 전달의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다음번 검침 결과에 따라 1개월 평균사용량을 산출한 후 이에 따라 요금을 정산한다.
- ② 계량점의 전압은 수급지점의 전압인 공급전압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급지점 이외의 지점이나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의 손실전력 및 손실전력량에 대한 부담주체는 다음과 같다.
 - 1. 수급지점 이외 지점에 공급전압과 동위전압의 계량점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계량점까지의 선로손실량을 한전이 부담한다.
 - 2. 공급전압보다 낮은 전압으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변압기 손실전력과 손실전력량을 고객이 부담한다.
- ③ 계기용변성기가 결상된 경우 최대수요전력은 제54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으로 협정한다.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전력량의 협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53 조 【전력량계의 검침】

- ① 전력량계,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는 정수(整數)까지 검침한다. 다만, 배수(倍數)를 적용하는 전력량계는 배수 계산 결과 사용전력량, 무효전력량 및 최대수요전력이 정수(整數)가 되는 소수(小數) 부분까지 검침한다.
- ② 전력량계의 숫자나 눈금이 중간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작은 숫자로 검침한다.
- ③ 주택용전력 고객이 건물철거 또는 불명공가 등인 경우에는 기본요금만 발행하고 다음달 검침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제 54 조 【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 ① 약관 제72조(사용량 등의 협의결정)의 “세칙에서 정한 방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협정치} = \frac{\text{직전 3개월의 실적치}}{\text{직전 3개월의 실사용일수}}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text{협정치} = \frac{\text{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치}}{\text{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사용일수}}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따른 방법 :

$$\text{협정치} = \text{사용설비용량(입력kW)} \times 1\text{일 사용시간}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 4.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협정치} = \frac{\text{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적치}}{\text{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의한 실사용일수}}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다만, 요금의 계산기간 중에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이 10일 이상 있는 경우에 한한다.

- 5. 한전의 변전소 기록에 따른 방법 :

변전소에서 직접 고객소유 전기설비 또는 이에 준하는 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고객 의 경우에는 한전 변전소의 기록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 6.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

참고용 전력량계에 계량된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협정할 수 있다.

- 7.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

$$\text{협정치} = \text{계량된 전력량} \div \{100\% + (\pm \text{오차율})\}$$

이 때, 협정기간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월까지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고일 또는 한전의 조사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 8. 제1호 내지 제7호에 따라 협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실적월과 협정월간의 계약전력이 다를 경우의 사용

전력량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협정치에 다음 수정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text{수정률} = \frac{\text{협정월의 계약전력}}{\text{실적월의 계약전력}}$$

이 때, 실적월 또는 협정월의 중간에 계약전력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감안한 다음의 가중평균 계약전력을 구하여 적용한다.

$$\text{가중평균 계약전력} = \frac{(\text{구계약전력} \times \text{구사용일수}) + (\text{신계약전력} \times \text{신사용일수})}{\text{검침기간중의 실사용일수}}$$

③ 고객이 희망하고 전력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제1항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협정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용설비용량 산정은 제12조(계약전력 산정)을 준용하되, 한전이 인정하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1. 시험성적서상의 입력용량 기준으로 산정하되, 출력만 표시된 경우에는 입력으로 환산한다.
2. 소형 통신중계기 등의 사용설비 용량은 실제 전력을 소비하는 설비만을 대상으로 산정하며, 시험성적서에 피상전력과 유효전력이 모두 표시된 때에는 피상전력에 지상역률 90%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통신중계기의 상용 운전 상태에서의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전력 또는 역률을 기준으로 사용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전력 5kW 이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5항의 협정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검침기간중 신(구)계기 사용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실적

$$\text{협정치} = \frac{\text{신(구)계기 사용전력량}}{\text{신(구)계기 사용일수}} \times \text{협정 대상일수}$$

2. 신계기나 구계기의 사용실적이 없거나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월 사용실적

⑤ 계약전력 6kW 이상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정은 다음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가능할 경우 "1"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토록 고객과 협의한다.

1. 참고용 전력량계에 따른 방법
2.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따른 방법
3. 당사 변전소의 기록에 따른 방법
4. 전력량계 교환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5. 전력량계 교환전 10일 이상(검침기간중)의 실적에 따른 방법

⑥ 제5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방법으로 사용전력량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전년동월실적, 전월실적, 직전 3개월 평균실적)을 참고하여 협의 결정할 수 있다.

⑦ 계기고장, 소손, 도난 및 고압계기 철거·부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전력공급이 곤란

한 경우에는 고객의 전기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직결송전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전력량의 협정은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 결정) 및 제73조(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55 조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 ①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은 시간대별로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에 준하여 협정한다. 다만, 해당월의 총사용전력량은 알고 있으나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모를 경우 및 약관 제72조(사용전력량 등의 협의결정)에 따라 시간대별로 사용전력량을 협정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이 경우에도 총 사용전력량은 약관 제72조에 따라 협정한다)에는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을 다음 중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협정한다.

1. 직전 3개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각 시간대별 협정치} = \text{당월 총사용전력량} \times \frac{\text{직전 3개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text{직전 3개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다만,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그 기간의 실적치를 적용한다.

2. 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각 시간대별 협정치} = \text{당월 총사용전력량} \times \frac{\text{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text{전월 또는 전년 동월의 총사용전력량}}$$

3. 교환전 또는 교환후 전력량계의 실적에 따른 방법 :

$$\text{각 시간대별 협정치} = \text{당월 총사용전력량} \times \frac{\text{교환전 또는 교환후 전력량계에 따른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text{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에 따른 총사용전력량}}$$

다만, 요금 계산기간 중에 교환전 또는 교환후의 전력량계의 실적이 1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이 약관 제73조(시간대별로 구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설치 고객의 사용전력량 협의 결정)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계산기간의 사용전력량을 아래와 같이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시간대구분계기의 실제 작동시간 오차에 따른 협정시 실적월과 협정월이 계절별로 다른 경우에는 주간시간대 및 저녁시간대 사용전력량을 계절에 따른 각 시간대별로 조정하여 협정한다. 이 때 전체사용전력량은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의 합계와 일치해야 한다.
2. 협정월과 실적월의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여름철 일요일 사용실적을 조정후 협정한다.
3. 오차가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상 틀리는 경우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각 시간대별 사용전력량 = 협정월 총사용전력량×고객의 동계(同季) 각 시간대별 사용비율

이 때 표준시간을 기준으로 ±15분 이상 틀리는 경우가 그밖의 철과 여름철에 걸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밖의 철과 여름철로 구분하여 사용일수 비례로 협정한 다.

4. 계절변경일을 기준으로 ±1일 이상 틀리는 경우의 사용전력량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 = \frac{\text{오차조정일부터 검침시까지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text{오차조정일부터 검침전일까지의 일수}} \times \text{협정대상일수}$$

※ 단 10일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제 56 조 【전기계기의 오차율 측정】

전기계기의 오차율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1. 전력량계의 오차율

전력량계의 오차율은 다음 표에 따라 당월 또는 전월 사용량에 따른 월평균 부하 전류에 해당하는 시험점 부하전류에서의 오차율을 적용한다.

구 분	월평균 부하전류	시험점 부하전류	사용공차(%)
보 통 전력량계	정격전류의 1/5이하	정격전류의 1/5	±3.0
	정격전류의 1/5초과	정격전류의 1/2	±3.0
정 밀 전력량계	정격전류의 1/10이하	정격전류의 1/10	±2.2
	정격전류의 1/10초과	정격전류의 1/2	±1.5
특별정밀 전력량계	정격전류의 1/10이하	정격전류의 1/10	±1.1
	정격전류의 1/10초과	정격전류의 1/2	±0.8

다만, 월평균 부하전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단상 전력량계의 경우

$$\text{월평균 부하전류} = \frac{\text{당월 또는 전월 사용전력량(Wh)}}{720(\text{시간}) \times \text{공급전압(V)}}$$

나. 삼상 전력량계의 경우

$$\text{월평균 부하전류} = \frac{\text{당월 또는 전월 사용전력량(Wh)}}{1,247(\text{시간}) \times \text{공급전압(V)}}$$

2.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및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의 사용공차는 ±4%로 하고, 오차율은 정격전류와 그 2분의 1의 2점에서 측정된 오차율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제 57 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 ①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2항에서 규정한 “납기일”이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다. 다만, 별도로 정한 도서지역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차수별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검침일	1~5	8~12	15~17	18~19	22~24	25~26	말일
납기일	당월 25	당월 말일	익월 5	익월 10	익월 15	익월 20	익월 18

- ② 납기일이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납기일을 그 익일로 하며, 공휴일에는 근로자의 날과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을 포함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납기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준하여 처리한다.
- ③ 한전은 고객이 납기일까지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요금청구서를 납기일 7일전까지 우편(전자우편, 휴대폰 문자메세지 송신 포함) 또는 방문 전달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요금청구서를 재발급하되 납기일은 원칙적으로 청구서를 재발급하여 고객에게 교부한 날부터 7일째 되는 날로 한다. 이 때 납기일 경과후 1개월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예고할 수 있다.
1. 한전의 귀책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2. 우편물 폭주로 송달이 지연된 경우
 3. 기타 한전에서 송달지연을 인정한 경우
- ④ 약관 제74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3항의 “세칙에서 정하는 바”라 함은 당월 청구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며, 소액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청구를 보류하고 청구금액이 2,000원 이상시 합산하여 청구한다.

제 58 조 【이중수납 및 과다수납 전기요금의 환불】

- ① 전기요금 이중수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 정산하되 환불요청하는 고객에게는 직접 환불한다.
- ② 약관 제76조(요금의 재계산 및 환불) 제2항에 따라 과다수납한 요금을 환불하는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다음 월분 전기요금에서 감액정산하는 경우는 납부일로부터 납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납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을 납기일로 한다.
 2. 직접 환불하는 경우는 납부일부터 환불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59 조 【연체료】

- ① 주한 외국군부대, 주한 외교기관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② 요금을 연체한 고객의 요금계산이 잘못되어 재계산할 경우 정당한 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당초의 요금에 추가하는 금액에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 60 조 【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

약관 제77조(요금 등의 납부방법) 제2항에 의한 요금감액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이체 납부
 - 가. 매월 자동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이하 “자동이체”라 한다)하는 고객은 요금의 1%를 감액하되, 1,000원을 한도로 한다.
 - 나. 고압아파트 자동이체고객은 세대별로 감액한다.
 - 다. 신용카드 자동이체고객은 감액하지 아니한다.
2. 인터넷·휴대폰 청구
 - 가. 매월 정기적으로 인터넷 또는 휴대폰을 통해 요금청구하는 고객은 200원을 감액한다.
 - 나. 월 청구요금이 200원에 미달하는 고객은 그 청구요금을 한도로 감액한다.

제 61 조 【요금의 보증】

- ① 임시전력 고객의 보증금은 아래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보증기간은 사용예정기간보다 3개월 이상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1. 건축공사장 등 이와 유사한 용도
고객유형별로 아래 기준금액으로 산정하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상 정상조업기간의 전기사용 실적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할 수 있다.
 - 가. 임시전력(갑) : 호당 100,000원
 - 나. 임시전력(을) 저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45,000원
 - 다. 임시전력(을) 고압전력 : 계약전력 1kW당 33,000원
 2. 기타 임시전력 현장
 - 가. 건축공사장 이외의 임시전력 고객에 대한 보증금 산정은 원칙적으로 보증금 전 “1”을 준용한다.
 - 나. 전 “1”에 따른 보증금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 1의 “위약유형별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사용설비의 사용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요금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터널, 관로, 지하철공사장 등과 같이 현장설비 상황에 따라 기준보증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3. 전기계기를 부설할 수 없거나 전기계기의 부설이 비경제적인 고객은 협정한 사용량에 따른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산정한다.
- ②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4호의 “요금납부에 보증이 필요한 고객”이란 다음의 고객을 말한다.
 1. 요금미납으로 전기공급이 정지되었으나 전기사용계약 해지를 유예한 고객
 2. 건조물이 없는 고객, 가건물 또는 무허가건물에 전기사용을 신청하는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5kW이하 고객은 제외
 3. 한전에서 요금분납을 허락한 고객

4. 시장, 상가아파트, 복합건물 등 단일구좌내에 여러 고객이 있는 경우로서 지불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고객
 5.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으로 보증설정이 필요한 고객
 6. 요금납부실적이 불량한 고객
 7. 신용평가업자의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이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으로서 요금을 납기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고객
- ③ <삭 제>
- ④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3항 단서에 불구하고 제2항 제1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2년,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증기간은 분납요금이 완납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 ⑤ 현금으로 예치한 보증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요금업무처리지침에서 따로 정한다.
 - ⑥ 보증금 이자계산을 위한 예치일수 산정시 예치일은 포함하고 지급일은 제외하며, 이자지급시기는 보증해제 또는 전기사용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 환불시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1년 이상 보증금을 예치한 후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⑦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의 예상월액 요금의 3개월분이란 동일업종 또는 동일 계약종별 고객의 kW당 월평균요금에 대해 해당 고객의 계약전력을 곱하여 3개월분 요금을 추정할 것을 말한다.
 - ⑧ 약관 제79조(보증금) 제1항 제3호 또는 세칙 제61조(요금의 보증) 제2항 제2호에 따른 보증설정 대상고객이 다음의 각호를 모두 충족한 경우 또는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이 연체된 전기요금 없이 다음달 예상전기요금을 당월 전기요금 납기내에 2회 이내로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보증설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2년이상 다른 장소에서 새로이 전기사용 신청하는 계약전력 이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최근 2년동안 전기요금을 연체없이 성실히 납부한 경우
 - ⑨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제3호의 “세칙에서 정한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이란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자로부터 6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개인고객을 말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으로 한전이 직접 신용등급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객은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여야 한다.
 - ⑩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2항에 따라 연대보증 방법으로 요금을 보증할 경우 연대보증인의 신용등급은 제9항의 신용등급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⑪ 약관 제79조(요금의 보증) 제1항 단서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고압 공급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이전까지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직접 또는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⑫ 약관 제79조(보증금) 제1항 제2호·제4호에 따라 보증이 필요한 산업용전력 고객에 대해 보증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 62 조 【일수계산】

- ① 약관 제80조(일수계산)에서 “요율변경 등 세칙에서 정한 경우”란 다음과 같다.
1. 전기를 새로 공급하거나 해지, 휴지(休止) 또는 재공급하는 경우
 2. 계약전력(정액제요금 고객은 사용설비)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3. 최대수요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새로 설치하거나 영구 철거하는 경우
 4.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않고 변경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변경된 계약종별을 적용할 수 있다.
 - 가. 계약전력 3kW이하 고객이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나. 계약전력 5kW이하 일반용·교육용·산업용전력 고객이 주택용전력 5kW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다. 주택용전력 5kW이하 고객이 일반용·교육용·산업용전력 5kW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라. 임시전력 5kW이하 고객이 다른 임시전력 5kW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 마. 농사용전력 5kW이하 고객이 다른 농사용전력 5kW이하로 계약종별을 변경하는 경우
 5. 정기검침일부터 5일 이상 변경하여 검침하는 경우
 6. 정기검침일을 변경하는 경우
 7. 선택요금을 변경하는 경우
 8. 약관 별표 1[월간 전기요금표]의 요율을 변경하는 경우
- ②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경우 및 주택용전력 고객으로서 약관 제12조(전기사용계약자의 변경) 제3항에 따라 신·구 고객별로 각각 계산하는 경우의 요금계산은 다음과 같다.
1.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2. 요금 계산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하여 계산 하되 일수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사용일수는 수급개시일 및 재사용일을 포함하고 해지일 및 휴지일을 제외하여 계산하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제7호·제8호에 따라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었던 날부터 변경 후 요금을 적용한다.
- ④ 요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검침(이하 “중간 검침”이라 한다)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간검침을 하지 않고 요금이 변경된 날을 기준으로 한 전후기간의 일수비례에 따라 사용전력량을 구분 산정할 수 있다.
- ⑤ 요금의 변경에 따른 일수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요금 또는 정액제요금(최저요금 포함)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1\text{개월 해당요금} \times \frac{\text{일수계산 대상일수}}{\text{월력(月曆)일수}}$$
 2. 전력량요금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 가. 주택용전력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의 “1.주택용전력”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을 다음과 같이 월력일수에 대한 일수계산 대상일수 비율로 조정한 후, 이것에 각 단계별의 1kWh당 전력량요금을 곱하여 합계한 금액을 일수계산한 전력량요금으로 한다.

$$\text{조정후의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 = \frac{\text{약관 별표1[월간 전기요금표]에서 정한 단계별 요금적용전력량}}{\text{월력(月曆)일수}} \times \frac{\text{일수계산 대상일수}}{\text{일수계산 대상일수}}$$

나. 주택용전력 이외의 계약종별

1kWh당 전력요금 × 사용전력량

3. 연료비조정요금을 일수계산하는 경우

연료비조정단가 × 사용전력량

제 63 조 【요일변경시의 중간검침 실시】

- ① 계약전력 1,000kW 미만 고객은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하며,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중간검침은 생략할 수 있다.
- ② 계약전력 1,000kW 이상 고객은 요율변동일을 기준으로 검침을 실시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다만, 주택용전력 적용고객(아파트 고객 포함)은 중간검침없이 요금변동일을 기준한 일수비례로 안분하여 요율변동 전·후의 사용전력량을 결정한다.

제 64 조 【전력사용의 휴지 등】

- ① 휴지대상 고객의 요금은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1.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2항에 해당하는 고객이 1개월 이내 휴지후 기본요금 적용기간에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2. 수급개시일까지 한전의 책임으로 수급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개시가 가능하게 된 때에 고객의 전기사용의사를 재확인하여 전기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②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2항 단서의 “일정 계약전력 이하”란 계약전력 5kW 이하를 말하며, 1년중 일정기간만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 적용한다.
- ③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장기간 휴지 및 미사용 고객이 한전의 요청에 따라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한 후 동일전기사용장소에서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요금 및 고객부담공사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④ 약관 제81조(전력사용의 휴지 등) 제3항의 적용에 있어 농사용전력(갑) 5kW이하의 고객은 휴지기간이 계속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⑤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여 휴지중인 고객으로서 전기사용의 중지 또는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휴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고객이 계속적인 전기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9 장 시설부담금

제 1 절 공사비 부담기준

제 65 조 【공사비 부담의 일반원칙과 시설부담금】

- ① 고객이 새로 전기를 사용하거나 계약전력을 증가하는 경우 또는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새로 설치 또는 변경하는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1. 발전설비, 송전설비 및 변전소 안의 한전 소유설비에 대한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단, 변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22.9kV 수전을 희망하는 경우에 신설 송변전설비 공사비는 고객과 한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배전선로 공사비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전과 고객이 부담한다. 이때 고객이 부담하는 공사비는 시설부담금으로 하며, 수급개시일 이후에는 해지하거나 계약전력을 일부 감소하는 등의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 ②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전 “설계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적·경제적으로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 ③ 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함에 따라 공사비 부담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으로서 표준공사비 적용대상 이외의 고객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담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 66 조 【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4호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설계조정공사비 적용이 타당하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단지 등에서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에 따라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미리 설치하고 설치비용을 사업주체가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동 선로를 이용하여 22,900V이하 일반공급설비로 단지내 신증설 고객에게 상시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2. 고객의 희망에 따라 22.9kV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3. 제10조(전기사용장소) 제2항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다만,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표준시설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4. 공급설비 설치비용 또는 고객의 전기사용 특성상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한전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공중공급 대상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기술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은 수급

지점의 한전 공급설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 및 거리시설부담금 모두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적용
 2. 지중공급설비로 공급하는 경우
기본시설부담금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거리시설부담금은 공중구간은 공중표준시설부담금, 지중구간은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 공중공급대상 지역에서 고객의 희망에 따라 신규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저압 공급대상 고객으로서 인입선을 지중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중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제21조(지중인입선)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지중인입선을 설치한 경우에는 기본시설부담금은 가공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지중거리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제1호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에는 공중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구간에 대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이 경우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수급지점의 한전공급설비를 기준으로 적용한 표준시설부담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④ 지중공급대상 지역에서 지형적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공중으로 시설하여 공급할 경우에 공중시설구간은 공중공급대상 지역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전압강하, 선로용량 부족, 장애 수요전망 등 한전의 사정으로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지 않고, 원거리에 위치한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 공사구간에 관계없이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배전선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다만, 22.9kV S.N.W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할 경우에는 실공급지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에 대하여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⑥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3항의 주택단지·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의 전기공급을 위하여 설치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다.

제 67 조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 ① 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지역(이하 “주택단지” 라고 한다)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공사비 부담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주택법 제23조(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를 준용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 전기간선시설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기간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에
정도로에 의하여 구획된 단지 경계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맨홀, 핸드
홀 등)까지로 하며, 개폐기·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은 공중(특고압 또는 저압)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주체, 입주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중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 전기간선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전기간선시설
(지중설치시)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에 단지내 배전시설
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비 부담

- (1)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이라 한다) 에 의거 개발되는 주
택단지로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집단으로 건설하거나 16,500㎡ 이상의 대
지(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다
만,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업지구의 가장 가까운 주
택단지 경계선까지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고, 그 밖의 개별 주택단지 경
계선까지의 공사비는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기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2. 단지내 배전시설

가. 설치범위

- (1)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는 단지 경계지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
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등)까지로 하되, 개폐기·전선·애자·완금류 등의 부
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
입개폐기·인입관로·인입케이블 및 저압수전 아파트 구내에 설치하는 전
기설비는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사업주체 부담 대상)에서 제외하되 사
업주체에서 요청할 경우는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 (1)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공중 또는 지중으로 설
치한다. 다만, 주택법에 의하여 조성되는 주택단지안의 배전시설은 주택건설
기준등에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지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설치비용이
입금된 후 전기간선시설과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공사비 부담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3.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주택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전이 부담한 경우에는 표준시설 부담금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1) 주택단지 등에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를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 경우

(2) 1999. 4. 30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주택단지 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단지에서 사업주체가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로서 22,900V로 공급하는 고객

(3) 2003. 11. 30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주택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한 주택단지에서 전기간선을 지중으로 시설하고 사업주체가 지중-공중 공사비의 차액을 부담한 경우

② 산업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범위 및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하 “산업법”이라 함)에 의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별표 5[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기준]에 따른다.

2. 산업법에 의한 산업단지 이외의 산업단지

가.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설치한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상기 “1”호 “나”의 설치방법 및 시기를 준용하되 사업주체로부터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에 설치한다.

다.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라.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산업단지에 설치된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③ 상기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단지로서 해당 법령에 간선설치 범위 및 비용부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배전시설 설치범위와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용대상

- 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조성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법 제55조(도시개발구역의 시설설치 및 비용부담 등)를 준용하는 지역
- 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조성되는 유통단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재정비촉진지구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 등

2. 업무처리방법

가. 전기간선시설 설치범위

단지 밖의 기존공급설비로부터 관련 법령에 의해 조성되는 단지 안의 6m이상 도시계획도로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나.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범위

- (1) 단지 안 6m이상 도시계획도로상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까지로 하되, 개폐기·전주·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2)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관로·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 설치방법 및 시기

-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 (나)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중(地中)설치를 요청한 경우
-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시기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아래 '라'의 설치공사비가 입금된 후 동시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공사비 부담

- (1) 전기간선시설 설치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에 의해 전기간선시설을 지중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지중으로 설치를 요청하는 자와 한전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 (2)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마. 개별고객의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에 따라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④ 기타 조성단지에 대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범위와 부담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적용대상

상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이외의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업무처리방법

가. 설치범위

(1) 전기간선시설

단지밖 기존공급설비로부터 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또는 핸드홀 등)까지 설치하며, 개폐기·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단지내 배전시설

○ 조성단지 경계지점의 전주 또는 지중접속점(전기간선시설 연결점)으로부터 단지내 입주고객의 전기공급에 지장이 없는 지점까지의 전주 또는 지중 접속점(맨홀, 핸드홀 등)까지로 하되, 개폐기·전선·애자·완금류 등의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 개별 입주고객의 전기사용규모 및 인입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변압기·인입개폐기·인입관로·인입케이블은 설치범위에서 제외하되 사업주체에서 추가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 설비까지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설치방법 및 시기

(1)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공중(空中)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술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나) 사업주체에서 지중설치를 요청한 경우

(2)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은 사업주체에서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를 요청하고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비용을 입금할 경우에 단지내 배전시설과 동시에 설치하되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 공사비 부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비는 전액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라. 개별고객 전기사용신청시 시설부담금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또는 단지내 배전시설 연결점으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의 22,900V 이하의 일반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⑤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사업주체 또는 사업 승인권자로부터 단지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내역이 통지되면 한전은 사업주체에게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설치주체(한전), 설치범위, 설치방법(공중·지중, 적용공법 등), 설치시기 및 공사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에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계약서를 작성한다.

- ⑦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연차적 개발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조성하거나, 동일 실시계획으로 공업용지와 주거용지 등을 함께 조성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 승인서상의 일단(一團)의 토지를 하나의 단지로 본다.
- ⑧ 기특법 제24조(산업단지 개발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특례)에 의하여 한전에서 산업단지에 설치한 다수가 이용하는 전기간선시설(철탑 또는 전력구)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 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에도 불구하고 철탑 및 전력구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하지 않는다.
- ⑨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 조성단지내에 설치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선로가 동일한 경과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방법(지중 또는 공중)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⑩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거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에서 공동구를 이용하여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대한 전기간선 설치비용은 전체 공동구 설치 공사비중에서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에 전기간선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송전선로, 전기통신시설 등 다른 용도의 시설 수용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수용되는 공간의 단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 ⑪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10항에 의거 주택단지, 산업단지 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관련 법령에 의해 개발승인을 얻은 사업지구)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주체 부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전력구(공동구를 포함한다)는 사용 회선수 비율, 관로는 사용 공수 비율로 부담한다.
 - 1. 조성단지 외부지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조성단지내에 설치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의 공사비
 - 2. 케이블 고장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체선로를 구성하기 위하여 미리 설치한 예비관로의 공사비
- ⑫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개발되는 주택단지 등 조성단지의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시기는 공사비가 입금된 후 단지조성시점에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입주시기나 부하전망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공사비는 전체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일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다.

제 68 조 【특별공급설비의 고객부담공사비】

- ① 약관 제85조(특별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에 따라 기존 고객이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일반공급설비 대신 특별공급설비를 새로이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 변경전에 부담한 시설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설계시설부담금의 산정은 제73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설비변경 전의 시설부담금으로서 차감할 금액은 다음중 한가지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과거 신규관련서류 또는 고객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여 고객이 설비변경전 시설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납부일로부터 신청일까지의 기간동안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다.
 2. 기납부한 시설부담금을 확인할 수 없거나 고객이 납부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시점의 공급설비 상태에서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을 차감한다.
- ③ 기존의 일반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의 설비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④ 특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설비 신·증설 또는 공급설비의 변경 등 고객의 사유로 인해 특별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특별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하여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또는 부하분리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강 및 부하분리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⑥ 한전이 미리 설치한 전주나 지중 관로(전력구·공동구 포함) 등의 기존 공급설비를 이용하여 특별공급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를 새로이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설계시설부담금에서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고객부담 공사비로 한다.

제 69 조 【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임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임시공급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하되, 변압기·개폐기·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② 약관 제86조(임시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단서의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임시전력 이외의 계약종별로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고”란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을 동시에 신청(고객명이가 다른 경우 포함)
 2. 건축허가서(건축물 불요고객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허가서)사본을 제출
 3. 상시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로 임시전력 공급 가능(단, 인입선은 제외함)
 4.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의 전기사용장소 동일
 5. 임시전력 인입선을 고객의 부담으로 시설·소유
- ③ 상시공급설비에 의한 시설부담금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상시전력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서 상시공급분 계약전력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하여 시설부담금을 추가로 적용한다.

- ④ 임시전력 사용기간 만료후에 상시계약종별의 변경이 명확히 예상되지 않았던 고객이 임시전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상시계약종별로 변경되더라도 임시공급설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감액하지 않는다.
- ⑤ 전기사용장소가 서로 다른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을 신청함으로써, 새로 설치하는 공급설비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1. 2이상의 고객이 모두 임시전력 고객인 경우에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 2. 2이상의 고객이 임시전력과 상시전력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시전력 고객이 먼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전력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을 결정하고, 임시전력 고객에 대하여는 상시전력 공급설비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설부담금을 결정한다.

제 70 조 【잠정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 ① 고객의 사정으로 긴급한 전기공급 요청이 있어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하되, 변압기·개폐기·지중관로 설치공사비에 대하여는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 이 경우 잠정공급설비 철거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 ② 한전의 계획에 따라 기존 가공배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지역에서 한전 사정으로 지중 배전선로가 설치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공중 배전선로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등 고객의 희망에 관계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잠정공급설비를 설치할 때 소요되는 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할 수 있다.

제 71 조 【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의 “공급설비 변경전”이라 함은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상태를 말하며, 이 경우 공사비 산정에 따른 표준시설부담금 단가는 공급설비 변경신청 시점의 단가를 적용한다.
- ②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받을 경우, 변경전 저압공사비는 기본시설부담금을 적용하고, 변경후 특고압 이상의 공사비는 기본 시설부담금과 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③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이 계약전력의 증가와 함께 고객의 희망에 따라 공급선로 또는 수급지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전력 증가분에 대한 표준시설부담금과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중 큰 것을 적용한다.

- ④ 약관 제29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 인수)에 따라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인수하기 위하여 한전에서 “기술기준” 및 한전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설비보강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도로개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고객소유선로가 철거되거나, 철거예정으로 인하여 한전 선로에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과 표준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⑥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으로서 대표고객의 변압기설비를 공용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공동이용 고객이 한전 선로에서 별도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의 “전기사용계약단위 분할”에 준하여 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⑦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가로등(갭)”으로 전기를 공급받던 고객이 “가로등(을)”로 전기사용계약단위가 합병되는 경우에는 합병전과 합병후를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산정한 표준시설부담금의 차액을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
- ⑧ 약관 제18조의 2(전기사용계약단위)에 따라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단위로 나누어져 있던 고객이 380V로 승압됨에 따라 전기사용계약단위를 기존 계약전력 범위내에서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적용하지 않고, 기존 계약전력 범위를 초과하여 합병하는 경우에만 기존 계약전력 초과분에 대하여 kW당 기본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⑨ 기존 전용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고 있던 고객이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용량 배전방식에 의한 전용공급설비로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설계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⑩ 약관 제89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시설부담금) 제1항 제1호 “가”의 단서의 “전기사용계약단위 합병(전기를 공급한 후 1년 이후에 한합니다)에도 불구하고 계약전력의 증가가 수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은 기본시설부담금을 말하며, 거리시설부담금은 고객이 부담한다.

제 72 조 【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 ① 약관 제90조(공동시설부담금의 분담) 제1항의 “2이상의 고객으로부터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이 있고”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전압이 같은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으로써 한전에서 동일설계 1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2. 먼저 신청한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되기 이전에 다른 고객으로부터 전기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집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명확히 예상됨에 따라 고객간의 공사비 부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전이 공동시설부담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②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거리시설부

- 담금을 고객 호수(戶數) 비율로 분담한다.
- ③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은 공용하는 설비에 대한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을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 ④ 표준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동시설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거리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기존 공급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고객(이하 “최초 고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에 의한 단독 거리시설부담금과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에서 다른 고객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공사비에 단독구간의 거리시설부담금을 합산한 공사비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2. 최초 고객 이외의 고객인 경우에는 직전 고객의 전기공급을 위한 공급설비가 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고객과의 공용이 끝나는 지점을 측정기점으로 정한 후 “1”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한 공사비와 앞에 있는 고객들과의 공용구간에 대한 분담공사비를 합산한 것을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기본거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차감한다.
 - 가. 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직선거리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리에서 차감한다.
 - 나. 실제로 구성·공급하는 선로로 시설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용선로 구간에서 차감하며, 공용선로 구간에서 분기되는 단독선로 구간의 거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고객의 경우에는 단독선로 구간에서 차감한다.
- ⑤ 공급전압이 서로 다른 고객이 혼재되어 동일설계로 처리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분담은 상위전압으로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공급설비가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특별고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2.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한 시설부담금의 분담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시설하는 공급설비만을 대상으로 시설부담금을 분담한다.
- ⑥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의 공용구간에 대한 공동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담금은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2. 지중 환상(Loop) 방식으로 전기공급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공급여력, 상시전력과 예비전력, 전원측으로 부터의 거리에 관계없이 단독구간 이외의 신설구간에 대하여 계약전력 비율로 분담한다.
- ⑦ 제6항의 경우로서 단독구간에 해당하는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은 당해 고객이 부담한다. 이 경우 “단독구간”이라 함은 당해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기점(지중 특별고압

Loop 방식인 경우에는 π 분기점에 해당하는 개소)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구간을 말한다.

제 73 조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 ① 한전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에 고객소유의 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지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공사비중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회선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 ② 한전 지중관로를 이용하여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중관로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공사비 중 당해 고객이 이용하는 관로공수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담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관로내경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
- ③ 전력구를 이용하여 22,900V이하의 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력구 이용 구간에 대한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시설부담금} = A \times \frac{\text{사용공수}}{6}$$

A : 175mm규격의 지중관로 6공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설계시설부담금

- ④ 고객이 임시전력을 공급받기 위하여 한전소유의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실발생공사비를 고객부담공사비로 한다.
- ⑤ 약관 제91조(고객소유의 전기설비를 한전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본문 단서의 “발전소 또는 변전소 구내”란 한전소유의 발전설비 또는 변전설비를 관리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도록 벽이나 담 또는 울타리로 구획하여 놓은 장소를 말한다.

제 74 조 【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 ①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의 “공급준비 착수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인입선 또는 외선공사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개시일
 - 2. 인입선공사만 수반되는 경우에는 인입선공사 시공지시일
 - 3. 외선공사가 수반되는 고객의 경우에는 외선공사 시공지시일 또는 외선공사 입찰공고일(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일)
 - 4. 특수물자(철탑, 해저케이블 등)가 소요되는 경우로서, “3” 이전에 물자를 발주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자 발주일
- ②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1항 단서의 “분할납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시설부담금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전체 고객부담공사비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공사비는 수급개시예정일 전까지 3회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2. 시설부담금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의 일부를 수급개시

이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가. 전체 시설부담금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공사비는 수급개시 이후 2년 이내 매월 균등분할납부 한다.

나. 수급개시 이후에 납부하는 잔여공사비에 대하여는 수급개시일부터 약관 제79조 (요금의 보증) 제5항에서 정한 보증기간 2년 미만인 경우의 이자율을 준용하여 이자를 부과한다.

다. 고객은 잔여공사비 납부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공사비부담계약 체결전까지 한전에 제출하며, 보증금액은 잔여공사비와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라. 고객이 잔여공사비를 2회이상 미납시 고객에게 통보후 이행보증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에 의한 주택단지·산업단지·기타 이와 유사한 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로서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공사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체고객부담공사비의 30%를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공사비는 단지조성완료일 전까지 3회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약관 제67조의 3(초과사용부가금) 제1항 단서에 따라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 고객이 희망할 때에는 전체 시설부담금의 30%는 공급준비 착수전에 납부하고 잔여시설부담금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고객과 협의하여 매월 균등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부담금 및 공사비의 정산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약관 제92조(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및 정산) 제2항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사비와 시설부담금의 설계서를 구분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서의 작성은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한전의 귀책사유로 시공 또는 공급이 지연되어 노임단가가 인상된 경우의 추가공사비는 정산대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부담금을 정산하는 경우의 재료비는 출고가액(출고가액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구매가액 또는 지입가액)을 적용하며, 기타 금액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실집행 금액에서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철거 환입물자의 잔존가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철거후 재사용이 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 그룹별 평균신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나. 철거후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자는 신품가액에서 잔존가치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 설치수량을 초과하여 철거 환입되는 물자는 설치물자와 동일수량, 동일규격 이하의 물자가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한다.

라.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보다 철거 환입물자가액이 클 경우에는 실제 설치되는 물자가액을 잔존가액으로 계상하며, 동선(銅線)을 알루미늄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동선과 같은 규격의 알루미늄전선이 철거 환입되는 것으로

처리한다.

5. 설계조정시설부담금 또는 설계시설부담금 적용대상 고객으로서 시설부담금을 수납한 후 설계 또는 시공변경으로 시설부담금이 10% 이상 증감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전에 시설부담금의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로 수납할 수 있다.
 6. 공급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한 후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전기사용개시일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시설부담금을 정산한다.
 - 가. 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납부한 시설부담금에서 공급설비의 시설 및 철거에 소요되는 실 발생비용을 차감하여 환불한다. 다만, 공급설비 설계를 위해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공사착공 이전에 전기사용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15,000원을 차감한 후 환불한다.
 - 나. 이미 설치한 공급설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공급설비를 변경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공사비는 고객이 부담한다.
 7. 제67조(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 및 공사비부담) 제12항 따라 한전과 사업시행자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조기 일괄 정산하기로 합의한 경우의 공사비 정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가 완료된 부분은 실소요 비용 기준으로 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라 정산한다.
 - 나. 단계적 설치 계획에 따른 잔여 시공분의 경우 도급비 또는 감리비는 설계공사비에 당해공사의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정산하고, 자재비는 정산시점의 출고단가와 지입단가를 적용한다.
- ④ 표준시설부담금을 청구한 이후에 계약전력 또는 신설·첨가거리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는 시설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추가 청구하거나 환불한다.

제 2 절 표준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5 조 【공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 ①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은 줄자 등을 이용하여 직접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물 또는 장거리 등으로 직접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도(地圖)상의 축척(縮尺)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 ② 고객소유의 인입소주를 이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측정기점은 한전 전주와 고객소유의 인입소주중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③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첨가공사 발생유무에 관계없이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있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삼상배전선로에서 직접 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상 배전선로에서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과 삼상 배전선로에서 연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중 적은 것을 적용한다.

- ⑤ 2상 3선식 공중 배전선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 3상4선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선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시설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 76 조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 ①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인근에 공급 가능한 측정기점이 되는 공급설비(개폐기, 변압기, 맨홀, 핸드홀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거리에 위치한 공급설비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선로구성과 관계없이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에 따라 원거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공급지점을 측정기점으로 한다.
- ② 지중공급지역에서 고객이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3상 공급설비를 측정기점으로 한다.
- ③ 한전의 요청에 따라 당해 고객 및 인근 타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변압기 설치장소를 영구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 구내에 새로 설치하는 변압기의 2차 측을 측정기점으로 할 수 있다.
- ④ 지중공급지역 또는 지중공급 인접지역에서 이면도로변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및 시설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1.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공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을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공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2. 이면도로의 공중배전선로에서 지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설비(지중 또는 공중)를 측정기점으로 정하고, 지중 표준시설부담금을 적용한다.
- ⑤ 지중배전선로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다음에서 정하는 입상거리와 연장거리를 합한 것으로 한다.
 - 1. 입상거리(立上距離) : “지표면으로부터 케이블 종단(Cable Head) 단자(端子)까지의 수직거리”와 “공중배전선로 지지물(측정기점)의 케이블 종단접속점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
 - 2. 연장거리(延長距離) : 수급지점에서 측정기점까지의 지표면상 평면거리

제 77 조 【특수한 경우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

- ① 표준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측정기점이 되는 설비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객이 전기사용신청 시점에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설설비로 한다. 이 경우 “기설설비”라 함은 당해설비 준공검사보고서상의 실준공일 이후의 설비를 말한다.
- ② 고객소유의 선로를 이용하여 제3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이하 “공용공급”이라 한다)의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고객소유 선로에서 분기하는 지점(측정기점)으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거리로 한다.

- ③ 공용공급중 고객소유의 선로가 철거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는 수급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공급가능한 한 전 전원측 배전선로(측정기점)에서 수급지점까지의 거리중 제2항의 거리를 차감한다.
- ④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의하여 시공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신증설 고객이 발생하였을 경우로서 동 공사 준공이후에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은 동 공사가 준공된 것으로 간주하여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 ⑤ 한전의 배전선로 보강계획 또는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이거나 철거중인 배전선로 인근에서 신증설 고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고객의 전기사용신청 시점의 배전선로 설치상태를 기준으로 측정기점을 결정한다.
- ⑥ 동일 고객이 동일 전기사용장소에서 2이상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별개의 인입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에 각각의 측정기점은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3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 ⑦ 신설거리와 첨가거리가 혼재하거나 공중배전선로와 지중배전선로가 혼재하는 경우의 거리시설부담금은 다음 방법에 의합니다.

$$\text{거리시설부담금} = A + B + C + D$$

$$A = (\text{공중신설거리} - 200\text{m}) \times \text{㉑}$$

$$B = [\text{지중신설거리} - (200\text{m} - \text{공중신설거리}) \times \frac{1}{4}] \times \text{㉒}$$

$$C = \{\text{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 - [(200\text{m} - \text{공중신설거리}) \times \frac{1}{4} - \text{지중신설거리}] \times 4\} \times \text{㉓}$$

$$D = \{\text{저압 첨가거리} - [(200\text{m} - \text{공중신설거리}) \times \frac{1}{4} - \text{지중신설거리}] \times 4 - \text{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 \times \text{㉔}$$

※ 각 산식내의 계산된 수치가 음수(-)일 경우에는“0” 으로 간주합니다.

㉑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공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㉒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지중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

㉓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고압 또는 특고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㉔ : 약관 별표4[표준시설부담금 단가표]의 저압 첨가거리시설부담금 단가

- ⑧ 약관 제94조(표준시설부담금 산정거리의 측정) 제2항 제3호에 따른 예비전력의 측정기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예비전력(갑)은 동일변전소에서 공급중인 상용전력 이외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2. 예비전력(을)은 상용전력 공급변전소이외 다른 변전소의 공급선로를 측정기점으로 적용한다.

제 3 절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산정방법

제 78 조 【저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① 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한전에서 일부구간을 고압 또는 22,900V 이하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간에 대한 전선 설치비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공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 32mm², 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ACSR-OC 32mm² 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나. 지중배전선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22.9kV 배전케이블 60mm²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② 변압기 설치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분담하는 경우로서 2이상의 변압기(배전함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 변압기별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고, 전체 변압기 용량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2. 기설변압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변압기 설치비는 설계시점에서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시설부담금을 산출하며, 기설변압기가 적철심 변압기인 경우에는 권철심 변압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3. 2이상의 변압기를 V, △ 또는 Y결선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결선상태에 관계없이 변압기 전체 설치비 및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한다.

4. 배전함 설치비를 조정하기 위해 저압 배전함 용량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주회로 개폐기의 용량계산을 위한 1차측 전압은 삼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380V, 단상 개폐기일 경우에는 220V를 적용한다.

가. 단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단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kVA)을 적용한다.

나. 삼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회로 개폐기를 삼상으로 운전할 경우의 연속 통전용량(kVA)을 적용한다.

5. 22,900V 승압예정 지역에서 변압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시점에서의 공급전압을 기준으로 변압기 설치비를 적용하여 조정하며, 승압공사 시행시점에서의 변압기 교체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6. 공급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철거되는 물자중 재사용 가능한 물자의 가액은 설계시설 부담금에서 차감한다.

7. 정액등 고객에 대하여 변압기(배전함을 포함) 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의 계산단위는 계약사용설비 용량(W)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약관 제84조(일반공급설비의 시설부담금) 제1항 제3호에 따라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이 적용되는 가로등에 대하여는 변압기(배전함 포함) 조정가액을 받지 않는다.

제 79 조 【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

- ① 약관 제97조(22,900V 특별고압 설계조정시설부담금)의 “전력구”라 함은 하나의 본체(本體)내에 다수의 전선로를 수용하고, 동 전선로의 점검 보수를 위하여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 ② 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는 나전선이나 절연전선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2. 약관 별표 5[적정전선 환산표]의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용량”이라 함은 계약전력을 말한다.
 3. 전선굵기를 결정하기 위한 거리계산은 공급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의 배전선로 실거리(km)로 하며, 실거리 산정시의 기존선로 부분은 도면상의 기설 거리, 신설선로 부분은 실설계 거리로 한다.
 4. 전선 설치비의 조정은 나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나전선 설치비, 절연전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절연전선 설치비를 적용한다.
 5. 계약전력이 약관 별표 5 “적정전선 환산표”상의 표시용량을 초과하여 적정전선을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적정전선규격이 실설계된 전선규격보다 하위규격의 전선임에도 불구하고 실설계된 전선가액보다 고가(高價)인 경우에는 전선 설치비를 조정하지 않으며, 실설계된 전선 설치비를 시설부담금에 계상한다.
 6. 2이상의 고객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하여 전기사용신청을 함에 따라 시설부담금을 분담하는 경우의 전선굵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공용구간의 전선굵기는 공용고객의 계약전력 합계와 공급변전소로부터 최종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나. 개별고객에게 공급되는 단독구간의 전선굵기는 개별고객의 계약전력과 공급변전소로부터 개별고객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③ 관로 및 전력구 공사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한전에서 장래의 수요를 대비하여 관로 또는 전력구를 추가 연장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체 관로거리와 당해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관로거리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조정한다.
 2. 지중 배전선로로 전기를 공급함에 있어 관로내경이 서로 다른 관로를 혼재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용공수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관로 단면적 비율로 시설부담금을 적용할 수 있다.
 3. 전력구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공사거리 등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전력구 설치거리는 평면상 직선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분기구와 분기구간의 실제거리를 적용한다.
 - 나. 전력구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설 케이블의 중간에서 분기 접속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전력구 이용거리는 케이블이 접속되는 분기구의 중심점으로부터 신·증설공급 분기구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적용한다.

- ④ 개폐기 설치비의 조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지중 배전선로의 개폐기 설치비를 조정하는 경우의 개폐기 설치비는 개폐기 본체를 설치하는 공사비를 말하며, 부속자재는 개폐기 설치비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전의 1차 배전전압 승압(22,900V化)에 따라 고객의 부담으로 수전설비를 변경하여야 하는 고객(1972. 11. 1 이후 신·증설 고객)의 수급지점에 설치하는 구분개폐기 및 개폐기 2차측 현수애자는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승압시점에서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한다.
- ⑤ 특수한 경우의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1.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이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변경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경우의 저압설비 철거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하며, 철거물자 가액도 시설부담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전의 배전선로 운영계획에 의하여 계획공사로 시공중인 선로 경과지 인근에서 설계조정시설부담금 적용대상 신규고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초 계획공사와 동일설계로 처리하되, 당초 계획공사의 설계 및 시공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되는 공사비는 당해고객이 부담한다.

제 80 조 【기존 공급설비의 보장】

- ①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장) 제2항 제1호의 “기존 배전선로의 교체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존 전주 또는 전선을 철거하고 다른 규격의 전주 또는 전선으로 교체하는 경우
 2. 기존 저압 배전선로를 22,900V 특별고압 배전선로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 배전선로의 공급전원을 변경하거나 배전선로 경과지를 변경하는 경우
- ②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장) 제2항 제2호의 “부하분리공사를 요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는 경우
 2. 기존 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재의 공급선로에서 분리하여 다른 공급선로에 연결하기 위한 배전선로의 신설, 연장 또는 전선첨가를 하는 경우
 3. 기존 공급선로의 용량부족으로 변전소로부터 수급지점까지 새로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
- ③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장) 제2항 제3호의 “전압강하 방지 또는 보장공사”란 고객에게 공급하는 전압을 약관 제23조(전기공급방식, 공급전압 및 주파수)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 ④ “기존 공급설비의 보장”이란 약관 제98조(기존 공급설비의 보장)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에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를 신·증설 고객의 전기공급

- 을 위한 공급설비 설치공사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경우
2. 단상 2선식 110V로 공급받는 고객에게 단상 3선식 110V/220V로 공급하기 위하여 전선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
 3. 신·증설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이 공용하는 개폐기를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
 4.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소유의 개폐기를 한전의 필요로 상위 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 이 경우 계약전력의 증가로 상위규격 또는 다른 종류의 개폐기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장에서 제외한다.
- ⑤ 신·증설 고객의 삼상 공급을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를 삼상화하는 경우에 기존 공급설비의 보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완금을 교체하는 경우의 완금교체는 기존공급설비의 보장에 포함하며, 추가 설치하는 애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장에서 제외한다.
 2.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서 설치된 톱핀애자를 교체하는 경우의 완금 1개 설치하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장에 포함한다.
 3.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설치된 단상 개폐기(COS 등)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공급설비의 보장에 포함하며, 수급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단상 개폐기를 삼상 개폐기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급설비의 보장에서 제외한다.

제 10 장 보 칙

제 81 조 【농어촌 융자금 회수】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는 한전에서 별도로 정하는 농어촌융자금회수관리요령에 따른다.

제 82 조 【S.N.W 공급방식】

22.9kV S.N.W 방식의 기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83 조 【기타】

고객과의 전기공급에 관한 사항중 이 시행세칙의 내용이 다른 지침의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이 세칙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4년 11월 16일(접수일 기준)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장 제61조(요율변경시의 중간검침실시)의 규정은 영업업무규정 폐지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장 제36조(재공급 수수료)의 규정은 1995년 6월 1일 이후 신청 접수한 고객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5장 제70조(당사 설비에 고객소유설비를 시설하는 경우의 공사비부담)의 규정은 세칙 시행일 이후에 신증설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장 제36조(재공급 수수료)의 규정은 1995년 7월 1일 이후 신청 접수한 고객에 대해 적용한다.
3. 1995년 5월 1일 시행 지침의 부칙 제2항(경과조치)은 삭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5년 6월 1일 이후부터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사용신청이 접수된 고객으로서 시행일 현재 미송전된 고객이 제2장 제1절 “제13조 제②항”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소급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1월분 전기요금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9월 1일(접수일기준)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5장 제1절 “제68조(공급설비의 변경에 따른 고객부담공사비) ⑨”의 규정은 1996년 5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세칙은 1996년 11월 5일(접수일 기준)부터 시행한다. 다만, 1994년 1월 1일 이후에 전기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고객으로서, 이 지침 시행일 현재 고객부담공사비가 정산되지 아니한 고객은 제5장 제1절 “제65조 ④”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7년 4월 30일 이전에 법률 제4900호(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에 의하여 공업단지안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5) 공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 기준”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7년 7월 1일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장 제50조(임시전력) 제④항의 규정은 1997년 8월 1일 이후에 신증설 신청을 접수한 고객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 (1998. 1. 8)

이 세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8. 29)

이 세칙은 1998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10)

이 세칙은 199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4. 1)

이 세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1. 2)

1. (시행일) 이 세칙은 1999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64조 제2항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7조 제1항 제1호 “가”(설치범위)는 1999년 4월 30일 이후 주택단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 3. 2)

이 세칙은 200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8. 6)

이 세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9. 18)

이 세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31)

이 세칙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 4)

이 세칙은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1)

이 세칙은 2002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27)

이 세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4. 23)

이 세칙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2)

이 세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1)

이 세칙은 200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22)

이 세칙은 200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22)

이 세칙은 200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23)

이 세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2)

이 세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 3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및 제28조(역률에 따른 요금의 추가 또는 감액) 제1항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한 고객의 경우에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당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7항 제2호의 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 검침분 고객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4. 10)

이 세칙은 200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12)

이 세칙은 200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8. 30)

이 세칙은 200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2. 10)

이 세칙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3. 1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8조(요금의 계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2004년 3월분 전기요금 감액계산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일수계산한다.

부 칙 (2004. 5. 28)

이 세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

이 세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4. 7)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은 2005년 3월 15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하여는 무효전력량계를 설치한 월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59조(연체료) 제1항의 연체료 계산은 2005년 10월분 전기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6. 9)

이 세칙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2)

이 세칙은 2005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 18)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장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1항의 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9. 2)

이 세칙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26)

이 세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31)

이 세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4)

이 세칙은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8. 1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에 대해 제24조(전기계기의 설치 기준)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무효전력 계량실적이 있는 월부터 기간평균역률을 적용한다.

부 칙 (2006. 9. 20)

이 세칙 제57조(요금의 납부의무 및 납기일) 제4항의 규정은 2006년 12월 검침분부터
용한다.

부 칙 (2006. 10. 9)

이 세칙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12)

이 세칙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3)

이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4. 18)

이 세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5. 22)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27조(역률의 계산) 제2항 제7호 가, 나의 세칙은 2007년 4월분 요금부
터 적용한다.
②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제6항 제2호 가의 세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
다.

부 칙 (2007. 5. 30)

이 세칙은 200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3)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시행일 이전에 전기가 공급된 고객이 재건축(再建築) 또는 부지를
넓혀 증축(增築)하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증설신청을 할 경우 기존 공급변압기 용량
범위내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때에는 제14조(공급전압 및 공급방식) 제3항 제2호
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2008. 12. 1)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가. 제29조 제3항과 제4항은 2008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나. 제67조 제3항 개정규정은 동 조항 제1호 적용대상 사업지구(단지, 구역, 지구) 해당 법령의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시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16)

이 세칙 제60조(청구납부방법에 따른 감액기준)규정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7)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4. 15)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9)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8)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6)

1. (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27조, 제32조 2항, 제48조 8항, 제48조의1은 2009년 10월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7. 30)

1.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1)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제39조(주택용전력) 및 제40조(일반용전력)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제48조(요금의 계산)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3. 제61조(요금의 보증) 제9항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2. 9)

이 세칙은 201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10)

이 세칙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 24)

이 세칙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4[기본공급약관특례]의 3(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과 4(전기자동차충전전력 전기요금)의 연료비조정요금은 2011년 7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 7. 2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경과조치) 세칙 제48조 제6항 단서 및 감액기준은 2011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1.12. 1)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 1. 제29조(위약금) 제1항 5호의 규정은 시행일 이후 접수된 고객부터 적용한다.
 - 2. 제49조(요금적용전력의 결정) 제10항의 규정은 2012년 1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 3. 제61조(보증금) ⑧의 단전·화의·회생절차중인 산업용전력 고객의 보증설정 면제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 4. 제61조(보증금) ⑫의 산업용전력 고객중 보증금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납부하는 산업용전력 고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2011. 12. 2)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 칙 (2012. 3.30)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기간) 제74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시행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기사용증설을 신청한 고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 4. 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유효기간)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 제5호의 단서 후문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중에 발생한 관련 업무는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③ (경과조치) 최대수요전력이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이 세칙 시행일 이전까지 계약전력을 증설한 고객에 대하여는 계약전력의 증설약정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제48조의 1(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 제1항 제5호 단서 후문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2. 4. 26)

- ① (시행일) 이 세칙은 2012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요금적용) 제43조(농사용전력) 제3항 제3호 내지 제4호의 수산물 저온보관시설 및 제43조(농사용전력) 제3항 제5호 내지 제10호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되고 전기요금 구분계산이 가능한 경우 2012년 4월 1일로 소급 후 일수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소급 적용하고 2012년 6월 1일 이후 신청분은 신청일부터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주시설이 내선분리 되어 별도 계약체결 된 후 수급개시일부터 적용합니다.

【별표 1】 위약유형별 산정기준표

위약유형	기 간	배 수	기기(업종)별 적용시간			비 고
			계약종별	기기(업종)명	시간	
(무단사용) 1. 계약없이 사용 2. 1차측 도전 3. 계기조작	6	3	가. 주택용 전력	조명등(전등)	7	1. 이 기준에 없는 기기에 대한 적용 시간은 사업소장이 결정한다. 2. 약관에 정하는 예비사용설비 및 불사용설비는 제외한다. 3. 위약유형 1~3호중 계약종별 “다”의 사용설비로서 이 기준에 명시된 적용시간 이상을 사용하는 사용설비는 실가동시간을 적용하며 각종 로(爐)는 24시간 적용한다. 4. 계절적인 사용기기는 실사용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실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측치에 의한 면탈액을 산정할 수 있다. 6. 위약유형 1~3호중 계약종별 “다”의 업종별 고객은 약관(별표2)의 산업분류표에 따라 적용한다. 7. 해당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계약종별내에서 가장 유사한 기기를 준용한다.
				전기다리미, 환풍기, 전기 세탁기, 토스터, 커피포트, 믹서	0.5	
				T.V, 선풍기, 전기스토브	6	
				전기밥솥, 전기오븐	6	
				냉장고	8	
				에어컨	6	
				전기장판, 전기온돌	8	
				보온밥통	8	
				소형모터, 콘로	2	
			나. 주택용 및 산업용을 제외한 모든 계약 종별	조명용전등	6	
				라디오, TV, 전축, 전기다리미	6	
				선풍기, 세탁기, 스토브, 환풍기	6	
				전기인두, 토스터, 커피포트, 믹서	0.5	
				에어컨	8	
				냉장고	12	
				냉동기, 냉동고	16	
				전기미싱, 콘로	6	
				양수모터, 전동기	3	
				엘리베이터	5	
			다. 산업용 전 력	농림업	4	
				수산업	4	
				석탄, 금속광업	10	
				비금속광업	6	
				식료품제조업	6	
				얼음, 장류, 사료제조업	8	
				음료제조업	8	
				섬유제조업	12	
				의류, 가죽류 제조업	6	
				제재 및 목재품 제조업	8	
				펄프 및 제지업	13	
				인쇄관련업	6	
				공화학제품 제조업	13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0	
				석유정제업 및 관련업	12	
				석탄가공업	8	
				고무제품 제조업	10	
도자기 및 점토품 제조업	8					
유리 및 요업제품 제조업	13					
금속 및 기계제품 제조업	6					
수도사업	13					
기타 제조업 (기타사업 포함)	5					
4. 사용량 협정중인 고객으로 협정일 이후 무단중설(계약위반)	6	3	해당계약종별			
5. 무단중설	4	2	해당계약종별			
6. 계약종별 위반	4	2	해당계약종별			
7. 사용기간 및 시간위반	4	2	해당계약종별			
8. 주택용 폐지 고객으로 계기 2차측 연결사용	4	2	해당계약종별			
9. 1주택수가구수 감소신 고누락 및 허위신고	4	2	해당계약종별			

【별표 2】 잠정사용설비의 사용 시간 기준표

사 용 설 비	기준 사용시간 및 기간
탈 곡 기 용 접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량×10시간×실사용일수 • 주택수리 : 용량×3시간× 5일 • 주택신축 : 용량×3시간×10일
연 마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용 량 = 평수×6kWh • 사용시간(일) : (사용량÷요금적용전력)÷8시간

【별표 3】 계절사용설비 및 사용기간 적용기준표 (2007. 5. 22 개정)

계절구분	기 기 명	기준사용기간	추가사용기간
하 계 (3월~10월)	선풍기, 에어컨	6. 1~8. 31	3. 1~ 5. 31 9. 1~10. 31
동 계 (11월~2월)	전기스토브, 전기장판, 전기온돌	12. 1~2. 28	11. 1~11. 30

【별표 4】 기본공급약관 특례

1. 관광호텔 전기요금 특례

가. 적용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에 적용한다.

나. 적용범위

호텔업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 하며, 부대시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사업 등록대장에 등록된 부대사업장으로 한다

다. 요금의 적용

일반용전력(갑) 고객은 산업용전력(갑) 요금을 적용하며, 일반용전력(을) 고객은 산업용전력(을) 요금을 적용한다.

라. 적용기간

2011년 1월분 요금부터 2012년 12월분 요금 중 봄(3월 ~ 6월)·가을(9월 ~ 10월)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삭제)

3.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 특례 (2011.12.15 개정)

가. 적용범위

약관 제57조[일반용전력] 고객으로서 다음 각호의 고객에 적용한다.

- (1)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연구시설(전문연구소, 펌 센터, 기술집적센터)
- (2)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인정된 시험기관
-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4)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 인증된 종합물류기업의 물류시설(도·소 매시설, 판매

시설, 택배영업소 제외)

-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적정보통신시설
(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소재 시설 제외)
- (7)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나. 요금의 적용

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불임[지식서비스산업 월간전기요금표]의 해당 요율에 따라 계산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기본공급약관 별표 6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계산한 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한다.

다. 적용기간

일반용 원가보상률이 종합원가보상률 이하가 되면 폐지한다.

(불임) 지식서비스산업 전기요금표 (2011.12. 2 개정)

가. 일반용전력(갑)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5,250원

(나)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①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 kWh당 90.60원
- ② 봄·가을철(3월 1일~6월 30, 9월 1일~10월 31일) : kWh당 56.70원
- ③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 kWh당 76.20원

(2)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200원

②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 kWh당 102.40원
-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 kWh당 64.30원
-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 kWh당 89.00원

(나) 선택(I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30원

②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 kWh당 97.80원
-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 kWh당 59.90원
-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 kWh당 82.90원

(3)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이상 고객)

(가) 선택(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200원

②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 kWh당 99.60원

○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 kWh당 62.80원

○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 kWh당 85.00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130원

② 전력량요금 : 모든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 kWh당 94.90원

○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 kWh당 58.10원

○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 kWh당 80.30원

나. 일반용전력(을)

(1) 고압전력A(표준전압 3,300V 이상 66,000V 이하 고객)

(가) 선택(Ⅰ)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470원

② 전력량요금

○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9.3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96.5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68.20원

○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9.3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65.7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89.10원

○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53.8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94.7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37.70원

(나) 선택(Ⅱ)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430원

② 전력량요금

○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4.5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91.7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63.40원

○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4.5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60.9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84.30원

○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9.0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89.9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32.90원

(2) 고압전력B(표준전압 154,000V 이상 고객)

(가) 선택(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6,390원

② 전력량요금

○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9.6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95.1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64.90원

○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9.6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64.8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87.00원

○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53.4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93.3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35.90원

(나) 선택(II)요금

①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7,090원

② 전력량요금

○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6.1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91.6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61.40원

○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6.1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61.3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83.50원

○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9.9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89.8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32.40원

4.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 적용 (2011. 12. 2 개정)

가. 적용범위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로 사용 연료가 전기인 자동차(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및 자동차 충전설비

나. 요금의 적용

- 요금은 1전기사용계약에 대하여 1개월마다 붙임[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의 해당 요율에 따라 계산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에 기본공급약관 별표 6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계산한 연료비조정요금을 합산한다.
- 계절 및 시간대별 구분은 기본공급약관 [별표3] 제1호(일반용전력(을), 교육용전력(을), 산업용전력(을))을 준용하되, 다만 저압의 경우 같은 호 중 단서조항 제1호의 공휴일의 최대수요전력과 2호는 적용하지 않는다.
- 충전장소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전력이나 일반용전력인 경우 기존 계약단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요금표

(1) 저압전력(표준전압 110V이상 380V 이하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130원

(나) 전력량요금

①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51.2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29.1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206.50원

②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52.1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62.6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67.90원

③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71.7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13.8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69.50원

(2) 고압전력(표준전압 3,300V이상 고객)

(가) 기본요금 : 요금적용전력에 대하여 kW당 2,290원

(나) 전력량요금

① 여름철(7월 1일~8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6.6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98.4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45.40원

② 봄가을철(3월 1일~6월 30일, 9월 1일~10월 31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47.5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57.1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60.60원

③ 겨울철(11월 1일~익년 2월 말일)

경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62.10원
 중간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89.70원
 최대부하시간대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kWh당 123.30원

5.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

가. 적용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전통시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전통 상점가의 일반용(갑) 저압고객 중 도매업 또는 소매업 고객

나. 적용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은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류코드	적 용 제 한
46102중	담배 중개업
46109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46416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 도매업은 할인 적용)
4711	대형 종합소매업

다. 할인기준

해당월 전기요금의 5.9% 할인하되,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며, 업종 전환 등으로 인한 적용 제외 시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다음 월분 요금부터 감액하지 아니한다.

라. 유효기간

2011년 12월 5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별표 5】

산업단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 부담 기준

《구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 기준》

1. 1995년 1월 5일 법률 제4900호로 개정·공포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 24조(시행일:1995년 4월 1일) 및 1997년 5월 1일 개정·시행된 이 세칙 “부칙 2(경과 조치)”에 따라 공업단지안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정의
법률 제4900호로 개정·공포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이하 “지구내 배전선로”라 한다)이란 공업단지내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시에 미리 설치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기공급설비로서, 지지물·애자·완금·전선·선로 구분개폐기·전력구·지중관로·케이블·맨홀·핸드홀·기타 부속물로 구성되는 일반공급설비를 말한다.
3. 적용대상 공업단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개발하는 공업단지로서 1995년 4월 1일 이후에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구내 배전선로의 설치요청을 접수한 공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설치방법 및 시기
 - 가. 공업단지내 배전선로는 가공(架空)으로 설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중(地中)으로 설치한다.
 - (1)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으로 설치토록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한 경우
 - (2)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전에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자가 지중 배전선로의 설치를 요청하고, 지중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추가비용을 요청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
 - 나. 지중(地中)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은 도로 등의 주요 기반시설 조성시에 설치한다.
 - 다. 가공(架空)으로 설치하는 부분은 당해 공업단지의 분양상황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의 전기사용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5. 비용의 부담
 - 가. 한전 변전소가 공업단지 외부에 위치한 경우에 변전소로부터 공업단지 경계지점까지 간선시설(일반공급설비) 설치공사비는 한전이 부담한다.

나. 단지경계지점 또는 공업단지 내부에 위치한 변전소로부터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비용은 한전과 입주자가 각각 100분의50의 비율로 분담하며,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시설 분담금”이라 한다)은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수급개시일로부터 3년간 매년 균등하게 분할·회수할 수 있다.

다. “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부터 전기사용장소(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고객부담공사비는 약관 제84조 제1항에 따라 표준공사비를 적용한다. 다만, 약관 제8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거나 표준공사비에 의한 고객부담공사비가 지구내 배전선로 설치공사비를 초과하는 소규모 농공단지 등의 경우에는 설계조정공사비를 적용한다.

라. 한전 공급설비로부터 전기사용장소까지 특별공급설비·임시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적용하지 않고, 약관 제85조·제86조 또는 제91조에 따라 설계공사비를 적용한다.

6. 시설 분담금의 산정(算定)

가. 공업단지내의 입주자별 시설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ext{시설 분담금} = \frac{(\text{지구내 배전선로 설계공사비} \times 0.5) \times \text{당해 입주자의 토지면적}(\text{m}^2)}{1) \text{ 공업단지개발 시행면적}(\text{m}^2) - \text{제외대상 면적}(\text{m}^2)}$$

註) 1. “당해 입주자의 토지면적”이란 전기사용신청자가 분양·임대 또는 승계 등을 받은 토지의 면적을 말한다.

2. “제외대상 면적”은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3에서 규정하는 “공공시설”중 다음 시설의 토지면적

- (1) 도로
- (2) 공원
- (3) 광장
- (4)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5) 하천
- (6) 녹지
- (7)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한 것에 한한다)
- (8) 유수지 시설

나. 시설분담금의 산정지점에서 특별공급설비 또는 고객소유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입주자가 있는 경우 당해 입주자의 토지면적

3. 공업단지 전체를 2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지구내 배전선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구별로 시설분담금을 결정할 수 있으며, 공구별 지구내 배전선로 설계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공업단지내의 배전선로 인출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공구별 토지면적 비율

로 각각의 공구별 지구내 배전선로 설계공사비에 배분한다.

나. 공구별 지구내 배전선로 설계공사비는 “가”에 의하여 배분된 금액과 다른 공구와 공동으로 사용되는 배전선로 인출부분의 공사비를 제외한 지구내 배전선로 설계공사비를 합한 것으로 한다.

나. 시설분담금을 적용받는 최초의 입주자에게 전기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전기를 공급받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square \text{ 시설 분담금} = \text{“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분담금} \times \frac{B}{A}$$

註) A. 최초 입주자의 전기공급일 익년도(翌年度)말의 생산자물가 총지수

B. 당해 입주자의 전기공급일 전년도(前年度)말의 생산자물가 총 지수

7. 고객 안내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지구내 배전선로의 설치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공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입주자에게 “6”에 의하여 산정된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을 미리 안내하도록 의뢰한다.

《신법적용 산업단지 업무처리 기준》

1. 1997년 4월 10일 법률 제5328호로 개정·공포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시행일 : 1997년 5월 1일)에 따라 산업단지안의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의 업무처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정의 (2000. 3. 2, 2003. 1. 30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이하 “단지내 배전선로”라 한다)이란 산업단지내 불특정 다수의 입주기업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시에 산업단지 밖의 기존 공급설비로부터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미리 설치할 수 있는 한전 소유의 전기공급설비로서, 지지물·애자·완금·전선·선로 구분개폐기·전력구·지중관로·케이블·맨홀·핸드홀·기타 부속물로 구성되는 일반공급설비를 말한다.

[다만, 철탑, 지중관로 또는 전력구를 다수의 고객이 공용하여 154kV 이상 고객소유 선로로 공급시 철탑(전선, 애자, 금구류 등의 부속물 제외), 관로부분(맨홀포함, 파이프제외) 및 전력구(전원 및 조명설비, 배수설비, 환기설비 등의 부대설비 포함)만 단지내 배전선로에 해당함]

3. 적용대상 산업단지 (2000. 3. 2 개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1997년 5월 1일 이후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단지내 배전선로의 설치요청을 접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97년 4월 30일 이전에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단지내 배전선로의 설치요청을 접수하였으나 1997년 5월 1일 이후에 착공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4. 설치방법 및 시기 (2000. 3. 2 개정)

- 가. 산업단지내 배전선로는, 한전 변전소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 가공(架空)으로 설치한다. 다만, 도로횡단·철도횡단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전에서 지중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중(地中) 배전선로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중으로 설치한다.
- 나. 지중(地中)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은 도로 등의 주요 기반시설 조성시에 지중시설 요청자(지중시설을 요청한 경우에 한함)로부터 공사비가 입금된 후 설치하되 요청자가 분납을 희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다. 가공(架空)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은 당해 산업단지의 분양상황 및 입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의 전기사용에 지장이 초래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설치하되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단지내 배전선로의 설치장소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

5. 비용의 부담

- 가. 전기간선시설 및 단지내 배전시설 설치비용은 한전이 부담한다. 다만, 사업주체, 입주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중설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한전과 요청자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며, 요청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시설분담금”이라 한다)은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하여 수급개시일로부터 3년간 매년 균등하게 분할·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 외부지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단지내에 시설한 부분의 공사비는 시설분담금에서 제외한다.
- 나.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로부터 전기사용장소(수급지점)까지의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고객부담공사비는 약관 제84조 제1항에 따라 표준공사비를 적용한다. 다만, 특별공급설비·임시공급설비 또는 예비공급설비로 전기를 공급받는 고객에 대하여는 약관 제85조·제86조 또는 제87조에 따른다.

6. 시설 분담금의 산정(算定)

- 가. 산업단지내의 요청자별 시설 분담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설 분담금

$$=(\text{단지내 배전선로 설계공사비} \times 0.5) \times \frac{\text{해당 요청자별의 토지면적}(\text{m}^2)}{\text{요청자들의 토지면적}(\text{m}^2) \text{ 합계}}$$

- 나. 시설분담금을 적용받는 최초의 입주기업(요청자)에게 전기를 공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전기를 공급받는 입주기업(요청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blacksquare \text{ 시설 분담금} = \text{“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분담금} \times \frac{B}{A}$$

- A. 최초 입주자의 전기공급일 익년도 말의 생산자물가 총지수
- B. 당해 입주자의 전기공급일 전년도 말의 생산자물가 총지수

【별표 6】 콘덴서 설치용량 기준표

1. 단상 유도 전동기

출 력		설 치 용 량 (μF)	
kW	HP	110V	220V
0.1	1/8	40	10
0.2	1/4	50	15
0.25	1/3	75	20
0.4	1/2	100	20
0.55	3/4	100	30
0.75	1	120	30

2. 200V 교류 전호(電弧) 용접기

최대입력 (KVA)	3	5	7.5	10	15	20	25	30	35	40	45	50
설치용량 (μF)	100	150	250	300	450	600	700	900	1,000	1,100	1,300	1,450

※ 교류 저항 용접기에 대하여는 위표의 1/2 용량을 사용할 것.

3. 200V · 380V 삼상 유도전동기

출 력		설치용량(μF)		출 력		설치용량(μF)	
kW	HP	200V	380V	kW	HP	200V	380V
0.2	1/4	15	—	7.5	10	200	75
0.4	1/2	20	—	11	15	300	100
0.75	1	30	—	15	20	400	100
1.5	2	50	10	22	30	500	150
2.2	3	75	15	30	40	800	200
3.7	5	100	20	37	50	900	250
5.5	7.5	175	50				

4. 3,300V 고압전동기

출 력		설 치 용 량(kVA)
kW	HP	
37	50	15
55	75	25
75	100	30
110	150	50
150	200	75

5. 기타 전기기계 · 기구의 경우

부 하 종 별	콘덴서용량(최저 kVA)
380V 삼상으로 사용하는 것	부하정격입력(kVA) 1/3
200V 삼상 또는 단상으로 사용하는 것	부하정격입력(kVA) 1/4
100V 단상으로 사용하는 것	부하정격입력(kVA) 1/5
기타의 전기기계	고객과 협의 결정

【별표 7】 기기별 역률 및 무효전력표

1. 저압전동기

출 력		역 률(%)	무효전력(kVar)
kW	HP		
0.2	1/4	60.0	0.262
0.4	1/2	66.5	0.447
0.75	1	73.0	0.691
1.5	2	77.0	1.230
2.2	3	79.0	1.699
3.7	5	80.0	2.767
5.5	7.5	78.5	4.330
7.5	10	79.5	5.716
11	15	80.5	8.099
15	20	81.0	10.845
22	30	82.0	15.340
30	40	82.5	20.544
37	50	83.5	24.380

주 : 콘덴서가 일부 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전력의 합계에서 부설된 콘덴서용량 (kVA)의 합계를 차감 계산함

2. 3,300V 고압전동기

출 력		역 률(%)	무효전력(kVar)
kW	HP		
37	50	80.0	27.750
40		80.5	29.464
50		81.5	35.533
55	75	82.0	38.385
60		82.5	41.088
75	100	83.0	50.398
100		84.0	63.280
110	150	84.5	69.600
125		85.0	77.451
150	200	85.5	90.971
200		86.0	118.657

주 : 콘덴서가 일부 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전력의 합계에서 부설된 콘덴서용량 (kVA)의 합계를 차감 계산함

3. 용접기의 무효전력(kVar)

입력 (kVA) 역율(%)	3	5	7.5	10	15	20
	40	2.750	4.583	6.874	9.165	13.748
41	2.736	4.560	6.840	9.120	13.680	18.240
42	2.723	4.538	6.806	9.075	13.613	18.150
43	2.709	4.515	6.772	9.029	13.544	18.058
44	2.694	4.490	6.734	8.979	13.469	17.958
45	2.679	4.466	6.698	8.931	13.397	17.862
46	2.664	4.440	6.659	8.879	13.319	17.758
47	2.648	4.414	6.620	8.827	13.241	17.654
48	2.632	4.386	6.579	8.772	13.158	17.544
49	2.615	4.359	6.539	8.718	13.077	17.436
50	2.598	4.330	6.495	8.660	12.990	17.320
51	2.581	4.301	6.452	8.602	12.903	17.204
52	2.564	4.274	6.411	8.548	12.822	17.096
53	2.544	4.240	6.359	8.479	12.719	16.958
54	2.525	4.209	6.313	8.417	12.626	16.834
55	2.505	4.176	6.263	8.351	12.527	16.702
56	2.486	4.143	6.215	8.286	12.429	16.572
57	2.465	4.108	6.162	8.216	12.324	16.432
58	2.444	4.073	6.110	8.146	12.219	16.292
59	2.422	4.037	6.055	8.073	12.110	16.146
60	2.400	4.000	6.000	8.000	12.000	16.000
61	2.378	3.963	5.944	7.925	11.888	15.850
62	2.354	3.923	5.885	7.846	11.769	15.692
63	2.330	3.888	5.825	7.766	11.649	15.532
64	2.306	3.843	5.764	7.685	11.528	15.370
65	2.280	3.800	5.699	7.599	11.399	15.198

(kVA) 역률(%)	입 력					
	25	30	35	40	45	50
40	22.913	27.495	32.078	36.660	41.243	45.825
41	22.800	27.360	31.920	36.480	41.040	45.600
42	22.688	27.225	31.763	36.300	40.838	45.375
43	22.573	27.087	31.602	36.116	40.361	45.145
44	22.448	26.938	31.427	35.916	40.406	44.895
45	22.328	26.793	31.259	35.724	40.190	44.655
46	22.198	26.638	31.077	35.516	39.956	44.395
47	22.068	26.481	30.895	35.308	39.722	44.135
48	21.930	26.316	30.702	35.088	39.474	43.860
49	21.795	26.154	30.513	34.872	39.231	43.590
50	21.650	25.980	30.310	34.640	38.970	43.300
51	21.505	25.806	30.107	34.408	38.709	43.001
52	21.370	25.644	29.918	34.192	38.466	42.740
53	21.198	25.437	29.677	33.916	38.156	42.395
54	21.043	25.251	29.460	33.668	37.877	42.085
55	20.878	25.053	29.229	33.404	37.580	41.755
56	20.715	24.858	29.001	33.144	37.287	41.430
57	20.540	24.648	28.756	32.864	36.972	41.080
58	20.365	24.438	28.511	32.584	36.657	40.730
59	20.183	24.219	28.256	32.292	36.329	40.365
60	20.000	24.000	28.000	32.000	36.000	40.000
61	19.813	23.775	27.738	31.700	35.663	39.625
62	19.615	23.538	27.461	31.384	35.307	39.230
63	19.415	23.298	27.181	31.064	34.947	38.830
64	18.213	23.055	26.898	30.740	34.583	38.425
65	18.998	22.797	26.597	30.396	34.196	37.995

주 : 1. 출력= 입력×역률로 환산

2. 당해 용접기의 입력 및 역률은 시험성적표에 의함
3. 콘덴서가 일부 부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전력의 합계에서 부설된 콘덴서용량 (kVA)의 합계를 차감 계산함
4. 전등사용설비는 그 종류 또는 용량에 관계없이 역률을 90%로 간주하여 무효전력을 계산함

【별표 8】 평균역률 계산표

Wr/W		평균역률 (%)	Wr/W		평균역률 (%)
부 터	까 지		부 터	까 지	
0.0000	0.1004	100	0.8686	0.8954	75
0.1005	0.1752	99	0.8955	0.9225	74
0.1753	0.2279	98	0.9226	0.9500	73
0.2280	0.2718	97	0.9501	0.9778	72
0.2719	0.3106	96	0.9779	1.0060	71
0.3107	0.3461	95	1.0061	1.0345	70
0.3462	0.3793	94	1.0346	1.0636	69
0.3794	0.4108	93	1.0637	1.0931	68
0.4109	0.4409	92	1.0932	1.1231	67
0.4410	0.4701	91	1.1232	1.1536	66
0.4702	0.4984	90	1.1537	1.1848	65
0.4985	0.5261	89	1.1849	1.2166	64
0.5262	0.5583	88	1.2167	1.2490	63
0.5584	0.5801	87	1.2491	1.2822	62
0.5802	0.6066	86	1.2823	1.3161	61
0.6067	0.6329	85	1.3162	1.3508	60
0.6330	0.6590	84	1.3509	1.3864	59
0.6591	0.6850	83	1.3865	1.4229	58
0.6851	0.7110	82	1.4230	1.4603	57
0.7111	0.7370	81	1.4604	1.4988	56
0.7371	0.7630	80	1.4989	1.5384	55
0.7631	0.7892	79	1.5385	1.5792	54
0.7893	0.8154	78	1.5793	1.6211	53
0.8155	0.8419	77	1.6212	1.6644	52
0.8420	0.8685	76	1.6645	1.7091	51

Wr/W		평균역률 (%)	Wr/W		평균역률 (%)
부 터	까 지		부 터	까 지	
1.7092	1.7554	50	3.7920	3.9572	25
1.7555	1.8031	49	3.9573	4.1362	24
1.8032	1.8526	48	4.1363	4.3305	23
1.8527	1.9039	47	4.3306	4.5424	22
1.9040	1.9571	46	4.5425	4.7744	21
1.9572	2.0124	45	4.7745	5.0298	20
2.0125	2.0700	44	4.0299	5.3121	19
2.0701	2.1299	43	5.3122	5.6261	18
2.1300	2.1923	42	5.6262	5.9775	17
2.1924	2.2576	41	5.9776	6.3736	16
2.2577	2.3258	40	6.3737	6.8237	15
2.3259	2.3972	39	6.8238	7.3396	14
2.3973	2.4721	38	7.3397	7.9373	13
2.4722	2.5507	37	7.9374	8.6380	12
2.5508	2.6334	36	8.6381	9.4712	11
2.6335	2.7206	35	9.4713	10.4787	10
2.7207	2.8126	34	11.4788	11.7221	9
2.8127	2.9099	33	11.7222	13.2958	8
2.9100	3.0130	32	13.2959	15.3521	7
3.0131	3.1225	31	15.3522	18.1543	6
3.1226	3.2390	30	18.1544	22.1997	5
3.2391	3.3633	29	22.1998	28.5539	4
3.3634	3.4692	28	28.5540	39.9875	3
3.4963	3.6389	27	39.9876	66.6667	2
3.6390	3.7919	26	66.6668	199.9975	1
			199.9976	이 상	0

- 주 : 1. W : 전력량계 계량치(kWh), Wr : 무효전력을 계량할 수 있는 전력량계 계량치(kVarh)
2. Wr/W는 소숫점 이하 4자리까지로 하고 5자리는 4사5입한 것임
3. 상기계산표는 평균역률= $\frac{W}{\sqrt{W^2+W_r^2}} \times 100$ 의 식에 따라 계산함
4. 상기계산표는 유효전력(kW)과 무효전력(kVar)에 의한 역률을 구할 경우에도 이
용할 수 있음